

2011 동계 대학총장세미나

브랜드 시대의 대학과 운영 효율화

일시 : 2011. 1. 20(목) 14:00 ~ 1. 21(금) 14:00

장소 : 부산 롯데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일 정 표

일시 : 2011. 1. 20(목) ~ 21(금)

장소 : 부산롯데호텔

제 1 일	1월 20일(목)		
시 간	일 정	발표 및 진행	장 소
13:30~14:00	등 록		1층현관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이기수 회장) - 2011년도 신입 대학총장 소개 (이기수 회장) 	진행 : 채선기 연구원	아트홀(3층)
14:20~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총회 1)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2) 감사보고 및 승인 3)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임원 선출(회장 및 부회장) 	사회 : 이기수 회장	
15:00~15:20	휴 식		
15:20~16:50	<p style="text-align: center;">〈 동계세미나 : 브랜드시대의 대학과 운영 효율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제발표 대학브랜드 시대의 대학 운영의 방향 - 주제1: 국가브랜드와 대학브랜드(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주제2: 국가 미래와 대학(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사례발표 대학운영 효율화 - 사례1: 그린캠퍼스 운영 방안(충남대) - 사례2: 전 학생 기숙형 대학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원대) 	좌장 : 한 송 총장	
16:50~17:00	○ 휴식 및 특별위원회 장소 이동		
17:00~18:00	○ 특별위원회 분과회의		★각 분과별 회의장
18:00~19:30	만 찬		아트홀(3층)

★ 각 분과별 회의장 다음 페이지 참조

제 2 일

1월 21일(금)

시간	일 정	발표 및 진행	비고
07:00~08:30	조식(뷔페/일식)		페닌슐라(1층)
09:00~10:00	○ 설립별 총장협의회 분과회의	국·공립대/ 사립대	사립대 : 아트홀 국공립대 : 사파이어룸 (지하LL층)
10:00~10:20	휴식 및 본회의장 장소 이동		
10:20~11:00	○ 2011 주요 사업계획 설명(정보공시제/대학평가인증/UNAI 등)	진행 : 기획조정실장	아트홀(3층)
11:00~12:00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사회 : 김영길 총장	
12:00~13:00	오 찬		크리스탈볼룸
13:00~14:00	○ 특성별 총장협의회 분과회의	교육대/신학대/ 산업대	클럽층미팅룸 33층 사파이어룸(지하 LL층)

□ 특별위원회 분과별 회의장 안내

특별위원회명	층수	룸명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42F	샤롯데
대학재정대책위원회	42F	아스토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42F	벨뷰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42F	버클리
사학법대책위원회	42F	피콕
대학평가대책위원회	3F	크리스탈볼룸(#3)
국제화대책위원회	33F	클럽층 미팅룸

목 차

주제발표

- 국가브랜드와 대학브랜드 3
- 국가미래와 교육 27

사례발표

- 그린캠퍼스대학 운영 방안 35
- 전 학생 기숙형 대학의 효율적 운영 방안 55

7개 특별위원회별 분과 세미나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63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79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109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123
- 사학법대책위원회 141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159
- 국제화대책위원회 173



주 제 발 표





국가브랜드와 대학브랜드



이 배 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국가브랜드와 대학브랜드

2011.1.20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국가브랜드 =
국격(國格)

브랜드

정의

브랜드란 이름, 용어, 사인, 심볼,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미국 마케팅 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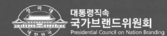
(역할)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매결정을 쉽게 해주는 가이드

목적 (Kotler)

- ❖ 제품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요 수단
- ❖ 제품가치에 대한 약속

☞ 국가브랜드

브랜드의 개념을 국가에 적용한 것으로 한 국가의 역사, 문화, 국민, 경제, 자연환경 등 유형 또는 무형의 정보와 경험을 활용 국내외에 의도적인 각인을 위해 기획된 상징체계



개인브랜드

- **이제는 이모작 또는 다모작 시대**
 - ❖ 과거에는 한우물을 파야 성공한다는 말처럼 처음 직장 이 마지막 직장
 - ❖ 세태의 급격한 변화속에 컨버전스 및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요구(대학의 복수전공 일반화)
- **개인의 브랜드로 승부**
 - ❖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도시(지역)브랜드



도시브랜드는 국가브랜드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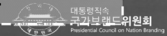
- ❖ 도시브랜드가 낙후된 나라의 국가브랜드도 낮은 평가
- ❖ GfK 도시브랜드 평가에 의하면 런던, 시드니, 파리 등 도시브랜드가 상위권에 위치할 경우 그 나라의 국가브랜드도 상위

(영향) 외국인의 해당도시 방문을 통해 관광, 투자, 문화 등 국가브랜드 구성요소와 밀접한 관계 형성

- ❖ 외국인은 도시에 머물며 잠시나마 그 나라의 문화나 국민성 등을 직접경험하고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

☞ 도시브랜드

기업과 투자자, 이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자를 통한 기업유지와 도시의 이미지 쇄신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시마케팅의 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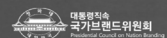
국가브랜드

(의미) 국가브랜드란 국가에 대한 호감도 · 신뢰도 등을 총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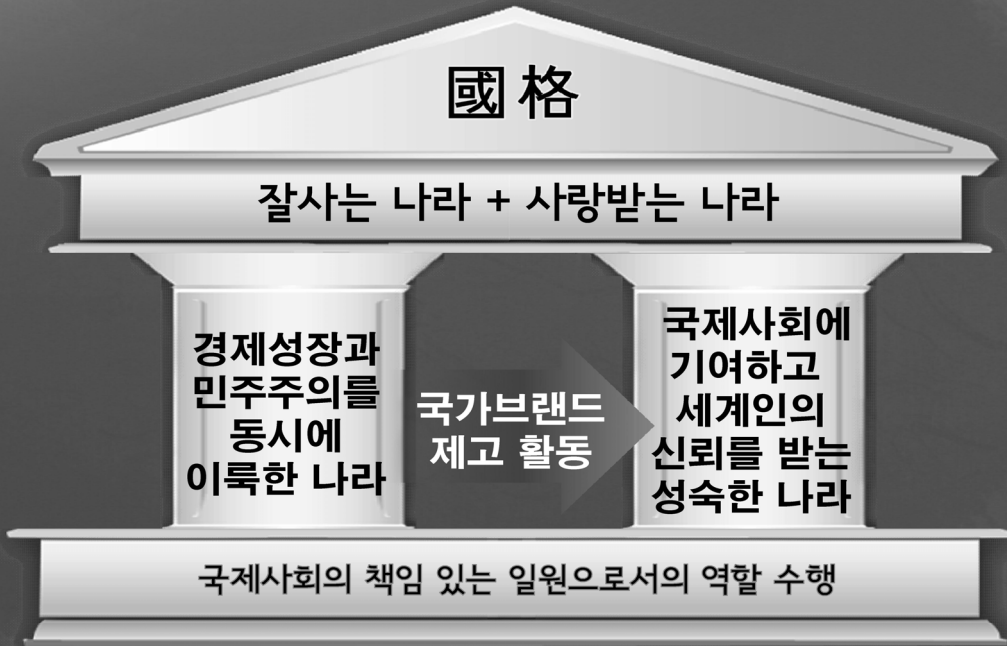
- ❖ 군사력·경제력 등 Hard Power보다는 국가의 품격(국격), 이미지 등 Soft Power 총칭

(영향) 우리 국민·상품·기업 평가에 결정적 영향

- ❖ 해외관광·유학 등 대외접촉 시 대우 및 상품 등 경제적 측면 영향



◦ 국가브랜드란 국가의 품격을 의미



7

국가브랜드의 중요성

□ 정치적 효과

- ❖ 국가 위상의 상승
- ❖ 국제 정치력 강화
- ❖ 국제 협력체제 강화
- ❖ 국가 자신감 회복



□ 사회적 효과

- ❖ 국민 결속력 증대
- ❖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 ❖ 선진적 문화 환경 조성 가능
- ❖ 부패와 편파에 대한 논란 일소



국가브랜드의 중요성 (계속)

□ 경제적 효과 (1)

- ❖ 브랜드 인지도 상승
- ❖ 고유 브랜드로 상품·서비스 수출
- ❖ 원산지 효과 획득
- ❖ 세계시장 접근 용이



□ 경제적 효과 (2)

- ❖ 외국인의 국내관광 촉진
- ❖ 통화안정성 및 신용 등급 향상
- ❖ 국제 신용과 투자자 신뢰회복
- ❖ 해외자금 조달 비용 하락



● 연도별 국가브랜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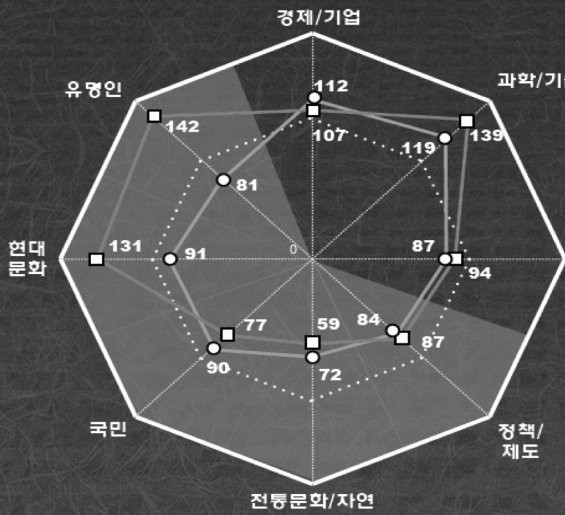
순위	2005	2007	2009
1위	호주	영국	미국
2위	캐나다	독일	프랑스
3위	스위스	캐나다	독일
4위	영국	프랑스	영국
5위	스웨덴	스위스	일본
6위	이탈리아	호주	이탈리아
7위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8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9위	프랑스	일본	호주
10위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한국 순위	25위	32위	31위

〈자료: 안홀트-GMI〉

2010 국가브랜드 분야별 현황

■ 실제도달률
 ● 이미지도달률
 ○ OECD도달률

단위: 분야별 OECD평균 도달률 %
 출처: 2010국가브랜드 지수(SERI 브랜드워)



SOFT POWER는 낮은 평가

- ① 유명인/현대문화
- ② 국민
- ③ 전통문화/자연
- ④ 정책/제도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G20 계기 국가 이미지 대폭 개선(16개국 4,000명 대상 설문조사)

G20 서울회의 인지도 75.3%

(한국 인지도 3.6%p 상승 - 1조 8,000억 원의 홍보효과)

한국에 대한 호감도 60.6%

(09년 대비 16.6%p 상승)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1. 01. 07



Bouncing back: South Korea knows how

france 2 .fr

한국 경제 · 한류특집방송
2011. 01. 03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특히 국제적인 역할 및 경제 분야에서 이미지 개선

60%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74%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다”

조사대상: G20 중 10개국
G20 이외 6개국
조사기간: 11.16 ~ 11.21
조사기관: TNS Research International

*BRICs 국가에서 보다 높은 긍정적 응답비율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72%)
- 한국의 경제적 위상(81%)

국가브랜드 저평가의 원인

국제사회에의 기여 미흡

- 세계 13위 경제적 위상에 비해,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 미미
- ✓ '09년 우리나라 ODA/GNI 비율(%) : 0.09% → OECD 회원국 중 27위
- 기후변화, 평화유지 등 전지구적 문제에 있어서도 기여노력 미흡

글로벌 시민의식 미성숙

- 결혼이민자·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존재
- 글로벌 에티켓 부족, 해외 추태사례 (성매매, 마약 등)

거주·관광지로서의 매력 부족

- 교육·의료·주거·언어 등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생활환경
- 특색있는 관광자원 부족

낮은 대외인지도

- 수출상품의 중저가 이미지 상존
- 문화자산에 대한 체계적 홍보 부족

우리는 앞으로...

품격있는 대한민국 2020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국가브랜드 상승과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것”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국가브랜드 상승전략

1. 국제사회 기여 확대

- 물질,재능,마음의 나눔
- 개발협력 및 인적교류(전문가, 대학생) 확대
: WFK 해외 봉사단 5만명까지 확대(2012)
- 공적개발원조,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을
한국대표사업으로 브랜딩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적 참여
(기후변화, 빈곤 등)



국가브랜드 상승전략

2.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 친절의식함양, 법질서의식, 환경개선
- 범국민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 한국인 해외 여행객들에게
글로벌 에티켓 홍보



국가브랜드 상승전략

3. 다문화 포용, 외국인 배려

-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 의료, 주거, 언어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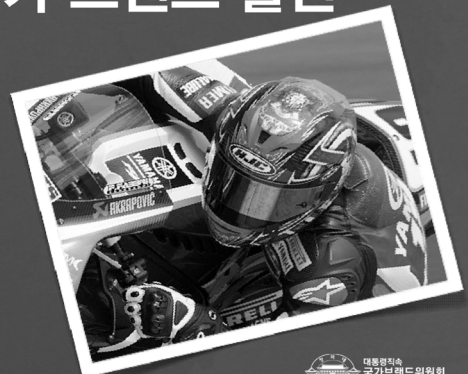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
President Council on Nation Branding

국가브랜드 상승전략

4. 첨단 과학과 기술의 세계화

- 국가, 기업 브랜드간 선순환 체계 구축
기업 마케팅과 연계한 국가 브랜드 발전
방안 강구
- 대한민국 명품 발굴,
브랜딩 및 홍보지원
(국가브랜드 인증제 등)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
President Council on Nation Branding

국가브랜드 상승전략

5. 문화 유산과 관광자원

- 유구한 역사와 문화속에 내재된 소통, 화합, 나눔, 배려, 생명, 자연, 평화의 정신적 가치확산
-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확대 (서원, 목판본 종택 등 지역브랜드 개발)

국가브랜드 상승전략

6. 교육강국으로서의 인재개발

- 전통적인 한국의 교육의 열정의 세계적 인지도 확산
- 인재개발을 통한 창의력과 팀워크창출
- 전문성과 인격을 겸비한 세계인재 개발
- 사람을 통해 그 국가의 이미지가 확보됨

국가브랜드와 대학브랜드

교육은 국가브랜드의 중심



프랑스 석학 기소르망
(Guy Sorman)

“강대국이 되려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오바마 미대통령

“한국의 교육열을 배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아이들에게
뒤지지않도록 해야한다”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브랜드제고의 핵심요인

- IMD 국가경쟁력 지수(2010)
 - : 고등교육이수율 2위
 -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51위
 - 대학교육 사회부합도 46위
- PCNB-SERI 국가브랜드지수(2010)
 - : 과학기술교육 분야 실체4위, 이미지10위
(50개국 중)

한국 교육의 현재

높은 교육열, 그러나
대학경쟁력은 아직 저조한 상황

- 상급학교 진학률은 OECD평균을 상회
 - : 고등학교 이수율 1위(25-34세)
 - 고등교육 이수율 1위(58%)
- 높은 학업성취도 : 읽기, 수학, 과학은
세계 최상위권(PISA 2009)
-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
58개국 중 46위(IMD 2010)

세계대학순위 : 한국대학들의 노력으로 순위 상승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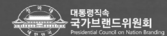
QS 대학평가 : 200위권 대학 4(09년) → 5(10년)

영국 더 타임스의 세계 대학 평가 순위

순위	대학(국가)
1	하버드대(미국)
2	캘리포니아공대(미국)
3	매사추세츠공대(미국)
4	스탠퍼드대(미국)
5	프린스턴대(미국)
6	옥스퍼드대(영국)
8	케임브리지대(영국)
9	캘리포니아주립대(미국)
10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영국)
21	홍콩대(중국)
26	도쿄대(일본)
28	POSTECH(한국)
79	KAIST(한국)
109	서울대(한국)
190	연세대(한국)

'QS 세계대학평가'의 국내 및 세계 주요 대학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케임브리지(영국)	3	2	1
하버드(미국)	1	1	2
예일(미국)	2	3	3
도쿄대(일본)	19	22	24
베이징대(중국)	50	52	47
서울대	50	47	50
카이스트	95	69	79
포스텍	188	134	112
연세대	203	151	142
고려대	236	211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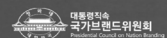
대학순위 평가의 한계

□ (기여) 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경쟁력 제고, 그러나...

□ 한 계

- ❖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다양해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 대학 규모나 지역적 특성, 설립 목적 등에 따라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기능이 다른 **획일적 기준에 따른 다양성 부족**으로 대학의 특성화 평가 소홀
- ❖ Peer Review나 Recruit Review 에서 오는 객관성과 합리성 부족
- ❖ 절대 점수 차이가 적어도 서열화 시켜버리면 학교 간 차이가 왜곡

적합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하지만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우리나라 대학이 평가에서 뒤지는 이유

□ 평가 지표 분석

- ❖ 우리나라 대학이 전반적으로 연구능력, 시설 등 대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국제화, 교수:학생수 등에서 점수가 낮음
- ❖ 특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Universal한 교육이 대부분
- ❖ 대학의 규제와 예산의 부족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대학경쟁력의 핵심 : 창의력과 팀워크

- 지식정보화 시대는 정보축적 과정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활용 능력이 중요함
- 창의력과 학문적 상상력을 길러주는 대학교육이 필요
- 방대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면서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는 능력이 중요해짐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 백화점식 교육을 지양하고 대학별 특성화 필요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과제개발 및 대학의 지역브랜드 창출
- 중복학과, 중복강좌를 최소화하고 학문간 융합, 연계전공, 심화전공, 특화전공 강화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학습자중심의 대학패러다임 변화

- 교수 중심의 대학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 변모 : 학생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변화
- 시대에 부응에 하는 학습 프로그램개발
- 진리탐구의 순수성은 보존하되, 이상과 실용의 조화가 필요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분야 별 대학컨소시엄 형성

- 연구중심 대학 컨소시엄을 통해 학생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가적 연구 역량 증진
- 세계와의 네트워크 형성 : 세계유수대학과의 공동연구 협력체계 강화
WCU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학부교육육성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전략적 재정운영

- 차별화된 대학 발전전략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대학은 차별화된 발전전략과 재정운영 가운데 학위수여기능과 논문생산기능만이 아닌, 사회에서 인정받는 총합적인 경쟁혁신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함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인성교육의 필요성

- 지성교육과 인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시대의 책임과 열정을 가진 지성인 배출
- 미래를 긍정적으로 열어나가는 실력있고 균형잡힌 인재양성
- 인류 문명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한국 역사교육의 중요성

-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 과거는 오래된 미래
- 오래된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
- 우리의 역사와 문화자산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한국적인 자긍심을 키워주어야 함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한국 역사교육의 중요성

-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 과거는 오래된 미래
- 오래된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
- 우리의 역사와 문화자산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한국적인 자긍심을 키워주어야 함

대학교육경쟁력 강화방안

대학에서의 나눔과 봉사 활성화

-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있는 지성인을 길러내기 위해 나눔과 봉사를 활성화
- WFK 등 국제봉사활동 참여활성화 및 국가-대학차원의 지원방안 모색필요 (경력인정-학점인정 등)

국가브랜드의 핵심은 인재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국가브랜드

- 재능을 갖추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지성인 양성
-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갖추며,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가 세계 속에 내세울 우리의 국가브랜드
- 우리 자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국가미래와 교육



곽 승 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MEMO 

 MEMO 

 MEMO 

 MEMO 



사 례 발 표





그린캠퍼스대학 운영 방안



(충남대학교)

Green Campus 운영 방안

2011. 1. 20



충남대학교



발표 순서

- 1 지구온난화와 Green Campus
- 2 Green Campus 국내외 현황
- 3 충남대학교 온실가스 배출량
- 4 충남대학교 Green Campus 운영 방안



1. 지구 온난화와 Green Campus



1 | 지구 온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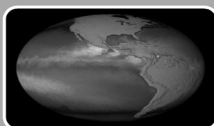
지난 100년간 0.74℃ 상승
한국은 2배인 1.5℃ 상승
북극 빙하 소실, 포획어종 변화 및 과채소류 재배지 경계 북상



2도 상승
매년 30만명이 기후관련 질병으로 사망
북극 바다의 얼음은 전부 사라짐, 10%의 생물 멸종(바닷속 산호 전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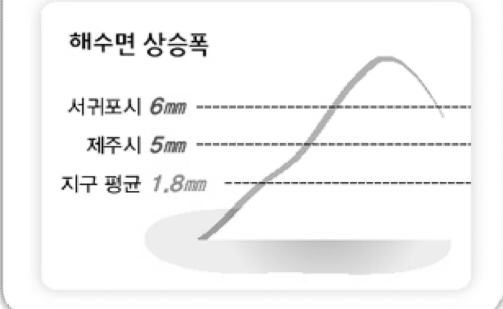


4도 상승
해안지역 인구 최대 3억명 홍수 피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사막화
50%의 생물 멸종, 해수면 5미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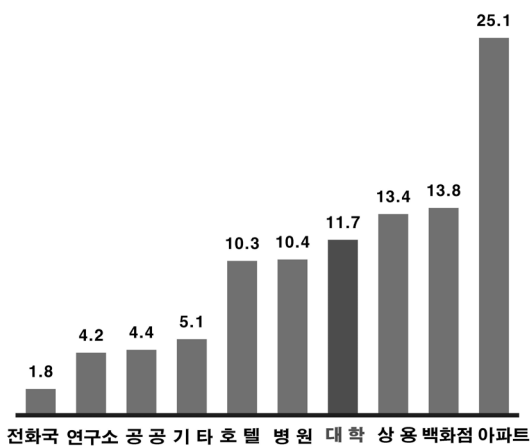
6도 상승
5천만년 전 지구보다 뜨거움, 전체 생물종의 90% 멸종
인간활동은 고지대와 극지방에 국한, 전체 인구 급감

1 | 지구 온난화



2 | Green Campus의 필요성

건물별 에너지 사용현황 (비율 %)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 (t CO₂)

순위	학교명	배출량 (tCO ₂)
1	서울대학교	49,416
2	포항공과대학교	31,680
3	고려대학교	23,971
4	연세대학교	21,250
5	한양대학교	18,786
6	경북대학교	16,255
7	성균관대학교	16,070
8	부산대학교	13,484
9	충남대학교	13,323
10	전남대학교	12,760

- ❖ 대학기관이 4번째로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음
- ❖ 2007년 76개 대학이 91만 3천ton 온실가스 배출

3 | Green Campus의 추진단계



CNU



2.Green Campus 국·내외 현황



CNU

1 | American College & University Presidents Climate Commitment(ACUPCC), 미국대학 총장 기후변화 위원회

설립 목적

- 대학을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인식
- 2007년 152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되어 50개 주 665 대학 참여 (09년 11월 기준)
- 미국대학 총장 기후변화 위원회(ACUPCC)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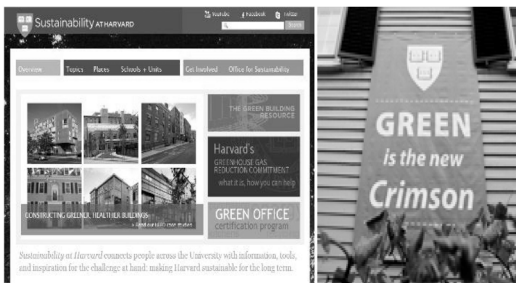


활동 사항

- 대학 캠퍼스에서 배출하는 CO₂를 줄이기 위한 감축 목표 설정
- 감축 목표 실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정서' 마련
-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 카테고리 및 산정 가이드라인 구축
- 2007년부터 ACUPCC Annual Report 발간으로 온실가스 저감 사례와 실천방안을 보고

2 | Harvard University

녹색캠퍼스 이니셔티브(HGCI)



- ❖ 2006년 5백만 달러의 이익과 27,180ton의 온실가스 감축
- ❖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 배출량 계산을 통해 캠퍼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 2002년부터 컴퓨터 에너지 절약프로그램과 자원효율프로그램 시행
- ❖ 캠퍼스 내 바이오디젤 주유소를 설치 학내 버스의 연료로 이용

3 | Yale University



- ❖ 학생 주도로 대학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 조사 분석, 감축방안을 모색
- ❖ 캠퍼스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가능성, 예산 감축, 배출원의 제어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전략 수립

예일대의 영역별 인벤토리 작성표 (단위:ton)

영역	배출량	비율
발전소/건물	244,814	86%
교통	34,904	12%
기타	11,236	4%
흡수원	-6,291	-2%
총배출량	284,663	-



4 | 국내 대학 현황

서울대학교

- 지속가능한 친환경대학 선언(2008.10.13)
- 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1/2 로 감축
- CO₂ 흡수량을 2030년까지 두배로 증가

상지대학교

- 환경친화적인 세계속의 지역대학(GENS 21)
- 교내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 녹색성장과 저탄소 내용을 접목함

국민대학교

- 차 없는 캠퍼스 : 주차공간 녹지화
- 녹색담장 : 담쟁이넝쿨 담장 조성
- 녹색강의 : CO₂배출량 감소량에 따라 학적 취득

숙명여자 대학교

- 캠퍼스 Watch 프로그램 구축
- 숙명여대 학생 환경봉사단 60여명으로 구성



3. 충남대학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벤토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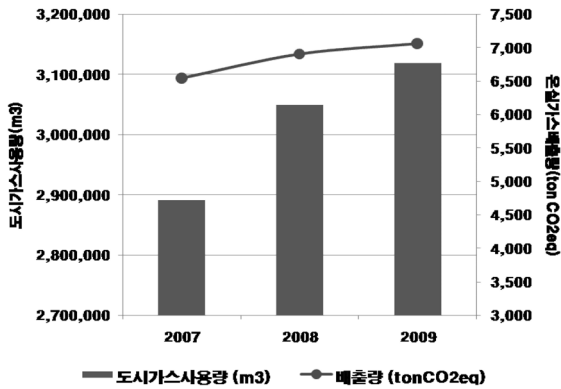


1 | 온실가스 배출 목록(Scope)

구분	배출원	활동자료
직접배출 Scope 1	고정연소	유류, 도시가스 사용량
	이동연소	공용차량 차종, 대수, 연간 총 운행거리 및 유류소비량
	농림업	대학 소유 가축수, 작물별 경작지 면적, 비료 시비량
간접배출 Scope 2	전력/수도	전력, 수도 사용량
	이동연소	교직원, 학생 정기권 현황 통학거리, 차종, 유류소비량
기타 간접배출 Scope 3	폐기물	처리 유형별 위탁처리량, 발생량
	대학지원 출장	해외출장 국가, 항공지원상황, 해외출장서류 DB
감축부문	카본 싱크	수목, 임지, 임야 DB

❖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2006 IPCC G/L)와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정안을 산정지침으로 사용

2 | 도시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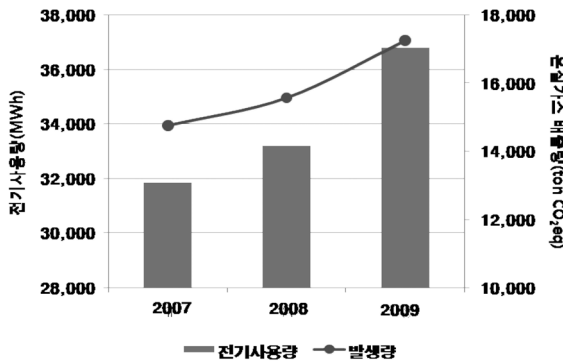
$$= \text{도시가스사용량} \times \text{배출계수}$$

구분	CO ₂	CH ₄	N ₂ O	단위환산계수
배출계수	56,467(Kg/TJ)	5(Kg/TJ)	0.1(Kg/TJ)	0.04(GJ/m ³)
GWP	1	21	310	

연도	2007	2008	2009
사용량(m ³)	2,891,403	3,049,635	3,118,291
배출량(tonCO ₂ eq)	6,546	6,905	7,060

- ❖ 도시가스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은 연평균 6,837tonCO₂eq
- ❖ 유류 사용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62배 가량 월등히 많고 난방연료로써의 사용량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3 | 전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 \text{전력사용량} \times \text{간접배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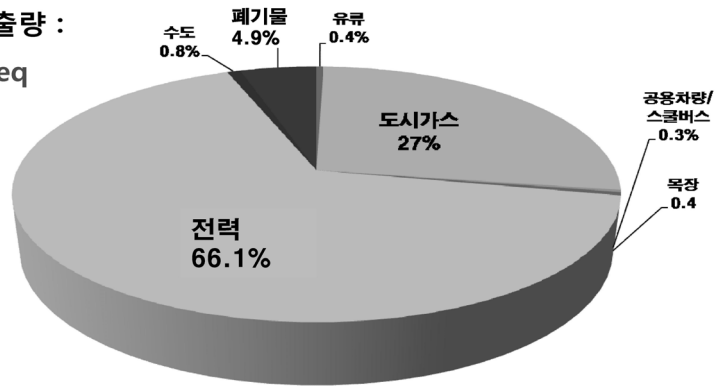
배출계수	2007	2008	2009
	0.4633	0.4691	0.4691
GWP	CO ₂	CH ₄	N ₂ O
	1	21	310

연도	2007	2008	2009
사용량 (MWh)	31,849	33,202	36,804
배출량 (tonCO ₂ eq)	14,756	15,575	17,265

- ❖ 2009년 전력 사용량은 36,804MWh, 온실가스 배출량은 17,265tonCO₂eq
- ❖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실센서부착, 카운트센서 등 에너지절약 기기 설치 및 냉난방 시스템의 효율개선이 시급

4 | 2009년 충남대학교 온실가스 배출현황

총 온실가스 배출량 :
26,102 tonCO₂eq



❖ 충남대학교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전력과 도시가스 사용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교직원과 학생의 출퇴근 및 등하교에 의한 간접 이동연소 부문 산정제외)

CNU



4. 충남대학교 Green Campus 운영방안



CNU

1.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 구성
2. 충남대학교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3.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방안
4.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양과목 개설 및 전문인력 양성
5.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시 친환경 설계
6. 녹색(친환경)제품 구매 의무화
7. 탄소장학금 및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
8. 녹색성장 연구 관련 지원
9.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온실가스 저감 운동 전개
10. 자전거 타기 활성화

1.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 구성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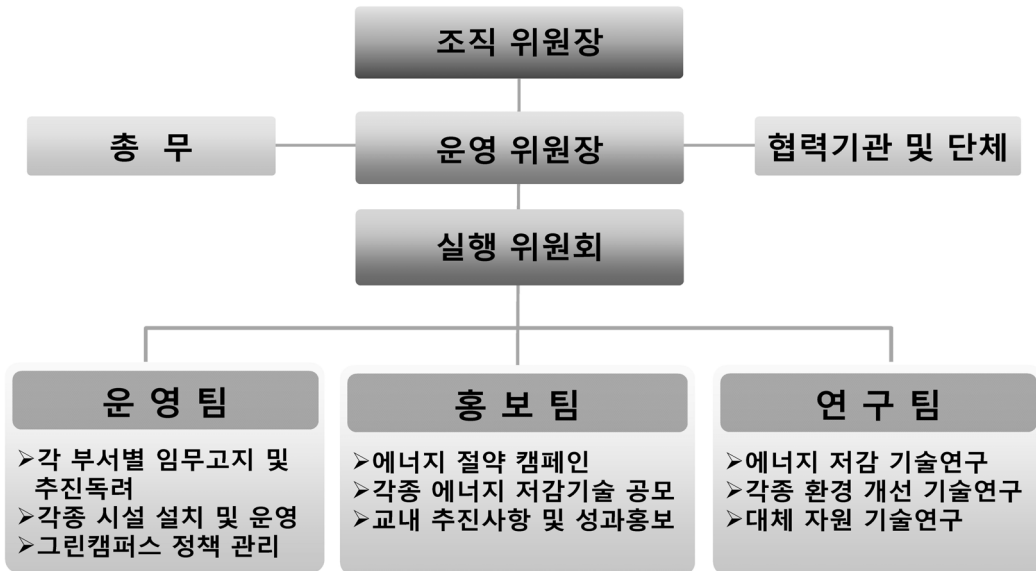
- 2010년 12월 1일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선포식 개최
- 충남대학교 온실가스 저감 실천방안 수립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

가. 구성시기 및 인원 : 2011년, 약 10명 선

나. 위원 및 임원 선출 : 위원장(총장), 운영위원장(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장),
기타임원(위원장이 선임)

1. 충남대학교 그린캠퍼스 조직



2. 교내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가. 목적

- 충남대학교의 자동차, 폐기물 부문 등 각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여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저감방안 마련

나. 연구내용

- 활동도 조사 : 유류 및 도시가스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전력 사용량,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
- 온실가스 배출 목록 및 배출량 산정 방법 제시
- 배출량 산정 : 유류, 도시가스, 상수도,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다. 구축기간 및 방법

-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 2009년 기준 26,102tonCO₂e_q
- 저감대책 수립 : 2010. 12월 부터 계속

3.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안

주요 추진 내용



- 교내 가로등 격등제 실시
 - 교내 가로등(124등), 정원등(668등) 중 약 50%소등
- 지역별 냉난방기 운휴제 지속 시행
 - 시행시기 : 2010. 9. 1 ~ 냉난방 종료 시 까지
 - 방법 : 11:50~12:40(50분간), 15:20~15:30(10분간) 냉난방기 가동 중지



- 인체 감지센서 제어 시스템 구축
 - 시행시기 및 소요예산 : 2011년 부터, 130,000천원
 - 방법 : 냉, 난방기 및 전등 자동제어(강의실, 실험실, 복도)

3.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안



- 에너지 도우미제 확대 운영
 - 교내 건물을 순회하며 전등 소등, 실내 적정온도 유지, 수돗물 잠그기 등 에너지 절약활동 수행
 - 3회 이상 적발 시 홈페이지 게재

- 중앙 통제 자동제어시스템 보강
 - 시행시기 및 소요예산 : 2011년 부터, 60,000천원
 - 적용건물 : 약학관 외 6개 건물(GHP 시스템 적용 건물)

- 수돗물 밸브 조절
 - 2010년 완료, 수돗물 밸브 조절을 통한 물절약

- 계량시스템 구축
 - 2010년 완료, 전기, 가스, 수도 계량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사용량 검침 및 비용 산출

4.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양과목 개설 및 전문인력 양성

가. 목적

- 대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
- 기후변화 전문인력 향성으로 확대되어 가는 녹색성장 산업의 인력수요에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할수 있도록 함

나.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양과목 개설

- 대상 : 2~3학년 학부생 200명 내외
- 방법 : 주 1회 2시간, 1~2학점의 교양 과목 신설
- 강의내용 : 기후변화의 이해,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정책 등

4.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양과목 개설 및 전문인력 양성

다.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 대상 : 환경관련 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 방법 : 주4회 1일 4시간 집중 실시
- 시기 : 2010년 3월 15일 ~ 5월 7일 (8주)
- 강의내용 :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녹색성장기술, 온실가스 감축기술, CDM과 배출권 거래제 등
- 한국환경공단과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간 협의
- 강의주제에 따라 학내교수 강의 및 외부인사 초청 강의
- 수료인원 : 총 22명

5.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시 친환경 설계



- **신재생 에너지 건물**
 - 신축 및 환경개선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적용
 - 태양열 · 지열설비(열 흡수 및 발열) : 녹색성장에너지 연구센터 적용(2011년 착공)
 - 태양광설비 : 기존 노후시설보수 시 적용

- **친환경 건축물 및 친환경자재 사용**
 - 자연조건(향, 길 및 지질등)을 고려한 건물배치
 -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 적용
 - : 침투성 포장재, 무석면 천장재, LED 등

6. 녹색(친환경)제품 구매 의무화

가. 목적

- 학내 물품 및 기자재 구입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에너지소비를 저감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대상

- 일반사무용품 : 친환경상품 인증제품
- 사무기기 및 기자재 : 친환경상품 인증제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다. 내용

- 대체제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내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친환경상품인증 등을 받은 녹색제품을 구매

7. 탄소장학금 및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

가. 탄소장학금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을 유도하여 전년도 대비 10%이상의 에너지 사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을 시 절감비용을 적립
- 건물별로 에너지 도우미 지정하여 강의실 전등 끄기 등의 봉사활동을 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010년, 4명, 20,000천원 지원)

나. 탄소포인트제

- 교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종이(복사지) 사용량 및 자가용 운행자제를 통해서 최근 3년간 종이사용량 및 운행거리를 바탕으로 목표량을 설정하고 감축분에 대하여 일정액의 인센티브 지급
- 종이 복사지 구입 절감 비용 및 주차료 징수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편성하여 부서별 평가 및 개인별 실적을 산출하여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8. 녹색성장 관련 연구 지원

가. 목적

- 녹색성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교직원 및 대학생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관련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충남대가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상 및 방법

- 교수 및 대학원생
- 녹색성장관련 연구에 연구장려금 추가 지급
- 녹색성장 관련 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 지급

9.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온실가스 저감 운동 전개

가. 목적

- 교직원 및 학생,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 운동을 전개함

나. 방법

- 홈페이지, 플래카드, 전광판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홍보
- 환경 단체 및 학생동아리 등과 연계한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그린프런티어 등)

다. 실천방법

- 나눔장터 및 바자회 개최
- 강의실 소등하기
-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하기
- 잔반 남기지 않기
-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등
- 점심시간 및 외근 시 컴퓨터 끄기

9.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온실가스 저감 운동 전개

라. 실천사례



○ 나눔장터 개최

- 충남대학교 그린프런티어팀 주최
- 수익금 전액 충남대학교 환경개선기금으로 기부
- 전국대학생 그린리더활동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 교직원 바자회

- 2010년 4월 교직원 주최로 나눔 대 바자회 개최
- 665만670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

10. 자전거 타기 활성화

가. 목적

- 학교 왕래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참여자의 건강 증진

나. 방법

- 자전거 이용도로 구간 : 유성 4가 ~ 충남대학교 도서관
-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 유성 4가와 도서관 인근에 가설 건물과 보관대 설치
 - 소요비용 :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에서 공동부담
- 자전거 확보 : 희망자 사전조사 후 자전거 대수 결정, 대전시 ‘타슈’ 활용

다. 기대효과

- 자전거 이용시 1인 연간 1.66톤 이산화탄소 절감과 건강증진





전 학생 기숙형 대학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원대학교)

전 학생 기숙형 대학 (Residential Uni:RU) 의 효율적 운영 방안

홍 기형 (중원대 총장)

본 사례 발표는 전 학년 모든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중원대 생활관』의 시설과 운영 실태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한국 대학 기숙사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기숙사가 지녀야 할 교육이념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 대학들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쟁점들도 함께 짚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I. 중원대학교 생활관 운영 개요

중원대학교는 2009년 개교하여 현재 전교생이 4년간 생활할 수 있는 기숙형 대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는 한반도 중심부(충북괴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출신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다. 따라서 중원대학교의 기숙형 캠퍼스는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주거 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중원대학교의 기숙형 캠퍼스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1) 특징

- 의무 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교생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음.
- 1학년 경우는 기숙사비가 무료이며 나머지 학년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이 부과되고 있음.
- 전공별 팀 중심으로 2인 1실 내지 3인 1실로 방 배정이 이루어짐.
- 학부 전공별 지도교수(Career mentoring professor: CMP) 제도와 연계된 밀착형 학생지도 프로그램 실시



JUNGWON UNIVERSITY Jungwon to the world, The world to Korea

2) 주요 생활관 운영 사항

① 행정 및 운영지원

- 생활관 지원 운영팀
- 학생 자치회
- 학부모 초청 간담회

② 학생 상담 및 지도

- 남녀별 기숙사동에 각 1명의 행정 책임자(사감)와 예절 지도자 배치
- 각 층별 학생회를 통한 선후배간의 멘토링
- 지도교수(CMP)와의 학업 및 생활상담

③ 쾌적한 생활관을 위한 벌점 제도

- 생활관 규정집에 근거한 벌점제도 운영
- 인원점검(점호)과 출입 통제
- 야간 학습 신청 시스템(당일 00:00)
- 외출 및 외박에 관한 통제
- 기타 공동생활 및 안전 수칙 준수

④ 강제 퇴사

- 입사 학기 단위로 벌점 15점 이상자
- 강제 퇴사자는 한 학기나 1년간 재 입사 불허
- 무단 퇴사자는 1년간 재입사 불허

3) 생활관 규모 및 시설

① 생활관 규모

- 지상 10층 연 면적 25,964㎡, 규모 남:1,200명 여:900명 최첨단 원룸형 침실, 세미나실, 스터디룸 휴게실, 외국어 카페(English only), 양호실, 남녀 이·미용실, 파티룸 등을 갖추고 있음.

② 부대 이용 시설물

- o 골프장 : 국내 대학 중 유일의 친 환경 골프 코스(9홀)로서 학생 이용요금은 1회 5,000원 임.



JUNGWON UNIVERSITY Jungwon to the world, The world to Korea

- 학생들은 화려한 교육시설 보다는 대학의 대외적인 평판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
- 따라서 시설과 인프라 구축보다는 학내 동아리 등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려는 노력 필요
- 특히, 지방 소재 대학으로서는 학부 중심의 교양과정 강조보다는 일찍부터 전공중심(학과 단위) 소속감을 심어주는 방안 검토

- ② RU 는 외국의 명문대(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가 운영하고 있는 지도 교수와의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 형태로 자리잡아야 한다.
- RU는 단순한 주거시설 제공이란 통념에서 벗어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교육과 문화, 예술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전인 교육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 RU의 성공여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선후배간에 이어지는 네트워크와 전통이 중요
 - 따라서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적 기틀도 RU의 성공적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 ③ 대학의 『취업지도의 시장화』 논리는 졸업 후 진로지도를 위한 생활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학협동 취업(Co-op) 프로그램 형태의 현장 실습과 일정 기간의 잠정적 취업 프로그램 등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 기숙사 공동체 생활은 통섭 (Consilience)형 인재 지향을 위한 최선의 예비취업 교육의 장(場)이다.



JUNGWON UNIVERSITY Jungwon to the world, The world to Korea

Ⅲ. 맺는 말

이상으로 대학 캠퍼스의 주요 학습 기관인 생활관 운영 실태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세 가지 의견을 더해 보겠다.

- 첫째, 대학 브랜드 시대의 생활관 시설과 운영은 종래의 전통적 단순 주거형 기숙사 개념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
- 둘째, 대학 생활제도 운영 시스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행·재정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 셋째, 글로벌 시대의 대학 생활관 운영은 적극적인 외국 유학생 유치와 대외홍보를 위한 국제수준의 시설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JUNGWON UNIVERSITY Jungwon to the world, The world to Korea



특별위원회별 분과 세미나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사학법대책위원회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국제화대책위원회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좌 장 : 이성우 위원장 (국민대학교 총장)

발 표 : 허종렬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최근 대학 자율화 관련 쟁점 검토

-정부와 국회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허종렬(서울교대, 대교협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자문교수)

I. 국회와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 동향

1. 대학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

가.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상한제 내용

나. 대학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의 개정

다. 문제점과 대처방안

(1)대학의 투자 위축

(2)상한제의 역설-장학금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피해 우려

(3)일률적 상한제로 인한 개별 대학들의 자율성 침해

(4)기여입학제 도입 명분 제공

2.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규제

가.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의 학생 선발의 원칙과 대학입학전형자료

(1)고등교육법에서의 학생선발방법의 원칙

(2)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의 학생선발의 원칙과 입학전형자료

나. 최근 정부의 논술비중 최소화 정책의 내용과 뿌리

다. 비판론과 대처방안

(1)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서의 논술 최소화 방안의 타당성 여부

(2)입학전형방법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당위성

(3)재정지원과 연계를 짓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

3.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제와 조성

가. 법안들의 내용

나. 법안 추진 배경(의원 발의안 종합)

다. 구체적 문제점

- (1) 시간강사 현황
- (2) 열악한 고용환경
- (3) 지향점
- (4) 재정 확보 방안

라. 정부 추진 방향

- (1) 추진 경과
- (2) 개정 법률의 내용 : 위의 의원 발의 법안들과 비슷함.
 - o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 o 강사 임용 방법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
 - o 연봉 인상
- (3) 기타 방안

마. 현실적 문제점

4. 기타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상의 대학 관련 개정안

- (1) 대학에서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방법의 명확화
- (2) 간호사 양성 과정의 수업 연한 확대 및 학사 학위 수여 근거 확보
- (3) 한국외교아카데미의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 연한의 근거 확보
- (4)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수여 근거 확보

5. 국회와 정부의 대학의 자율성 제한 및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I. 국회와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 동향

1. 대학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

가.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상한제 내용

등록금 상한제란 대학이 등록금을 부과할 때 고등교육법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만 책정하도록 한 제도임.

《 관련 조문》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¹⁾·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²⁾,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³⁾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

나. 대학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의 개정

위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부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2010.5.7, 일부개정 및 시행]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2010.12.2, 일부개정 및 시행]으로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

1)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를 포함한다.

2) 학생 1인당교육비의 산정근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에 의한다.

3) 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표 1》 대학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 내용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시행2010.5.7]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2010.12.2]	비교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11조제7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p>	
<p>제2조(징수금액)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등록금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교직원, 학생, 학부모 또는 동문,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함.</p>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2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 (등록금의 면제·감액)	
②사립의 학교는 현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등록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은 물론 국공립학교도 등록금의 감면의무를 지도록 함. 감면 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등록금 총액 기준 10% 이상으로 바꾸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감면액이 총감면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③국·공립학교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자의 총수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국공립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국공립학교의 감면액의 한계 설정

<p><신 설></p>	<p>제9조(행정적·재정적 제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	--	--

◎ 행정적, 재정적 제재 관련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 문제점과 대처방안

(1)대학의 투자 위축

등록금상한제는 대학으로 하여금 시설투자위축, 교수충원문제발생, 교육환경개선 등한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앞으로 대학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음.

상한제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등의 보완책이 필요함.

고등교육법은 이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매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2)상한제의 역설-장학금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피해 우려

상한제 실시로 대학들이 불요불급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을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학생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3)일률적 상한제로 인한 개별 대학들의 자율성 침해

지난 3년간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경우, 당시 큰 폭으로 올렸던 대학과 똑같이 인상률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각 학교 마다 재정여건이 다름에도 등록금에 대한 일률적인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등 문제점 야기.

(4) 기여입학제 도입 명분 제공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등록금 상한제가 이로 인한 학교재정 곤란을 명분으로 기여입학제에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2.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에 대한 규제

가. 고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서의 학생 선발의 원칙과 대학입학전형자료

(1)고등교육법에서의 학생선발방법의 원칙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의 학생선발의 원칙과 입학전형자료

제31조(학생의 선발) ①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 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회원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⁴⁾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나. 최근 정부의 논술비중 최소화 정책의 내용과 뿌리

(1) 2011.1.7, 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입시전형에서 **논술 비중을 최소화**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내신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대학에 요청함.

(2) 이 정책은 이미 MB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새 교육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굳이 대학들이 **현 수준의 논술 시험도 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함(08.1.16). 즉, 본고사 수준의 논술이 아니라면 강제로 논술시험을 폐지시키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음.

다. 비판론과 대처방안

(1)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서의 논술 최소화 방안의 타당성 여부
사교육 문제의 해법을 대입 논술 축소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요즘엔 사교육대책은 대학의 몫이 아니라고 하는 시각도 많아짐.

(2) 입학전형방법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당위성
대학은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정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 함.

(3) 재정지원과 연계를 짓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

정부가 대학입시에 관한 정책과 방법을 정해놓고 이에 따르는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 시 우선적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교육 관치’의 부활이라는 지적 있음(박정수, 2011.1.11, 문화일보).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학을 획일적으로 유도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함.

4)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

3.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제와 조성

가. 법안들의 내용

지난 2010년도 후반기 국회에서 새로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시간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 외에는 보이지 아니함. 관련 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동향

대표 발의자	권영길	황우여	박보환	유성엽	비고
발의시점	10.25	11.4	11.15	12.8	
제안이유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장.	○강사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함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강의 또는 학문연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함	○제안 사 유가 비 슷함. ○보장 방 조 법이 금씩 다 름.
주요내용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를 통합하여 명칭을 연구 강의교수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17조)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강사를 둬.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4조제2항·제3항). ○교원은 강의 또는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강사를 둬. ○강사의 종류와 임용 및 처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4조제2항·제3항). ○교원은 강의 또는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시간강사 제도 폐지 및 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부여(안 제14조, 제17조) ○교원이 “강의”만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교원의 범주에 드는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시킴. ○학칙 또는 정관으로 교육 또는 학문연구만을 전담(全擔)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하는 방안과 분리하되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대립함.

교원의 직급구분	○교수·부교수·조교수·연구강의교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강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강사	
재원확보 방안	○추가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근거 규정 제시하지 않음)		○강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실시(안 제7조제2항)		

나. 법안 추진 배경(의원 발의안 종합)

- 막대한 사회비용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 영역, 시간강사들의 끊임없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와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유네스코도 1997년 11월 제26차 유네스코 본회의에서 채택된 ‘고등교육 교원에 관한 지위에 관한 권고문’을 통해 파트타임 교육담당자가 제공하는 교육활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다. 구체적 문제점

(1) 시간강사 현황

시간강사는 2009년 기준 72000명으로 전체 교원수 대비 55%, 교양강좌의 51% 선, 전공 강좌의 36% 부담. 2010년 4월 현재 시간강사의 수는 9만209명,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5만 명으로 추산.

(2) 열악한 고용환경

- 보수수준 :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임금(평균 1,026만원의 연봉 등. 최저 13000원-최고 97000원, 전임강사 평균인 4495만원의 1/4 수준)
- 불안정한 고용조건 : 임용기간의 경우에도 학기당 계약으로 하는 불규칙한 고용 등 신분상의 불안정
-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배제 : 보험혜택 부실(국민연금 6%, 건강보험 2.6%, 고용보험 50.4%, 산재보험 72.6%)

(3) 지향점

-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수가 되지 못하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 아니면 도'식의 현재도를 벗어나, 최소한 시간강사를 하더라도 '생활'이 가능하며 어엿한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재정 확보 방안

개정안에 수반되는 재원을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권영길)과 강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무화 내용 추가방안(박보환)이 대립함.

라. 정부 추진 방향

(1) 추진 경과

- o 2010.10.25,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원회의 시간 강사처우개선방안 보고
- o 국회와 별도로 정부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하여 12월 중 국회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예정
- o 2010.11.11,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 입법예고
 - 시간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로 한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2) 개정 법률의 내용 : 위의 의원 발의 법안들과 비슷함.

o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 현재는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와 함께 교원외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시간강사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에 포함됨.
- 계약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바뀜.

o 강사 임용 방법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하되 자격, 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규칙 준수하도록 함.

- 강사 임용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한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임용하도록 함(임용기준의 공정성 확보).
- 대학은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 외에는 강사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없음.
- 명칭도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뀌고, 역할 또한 강의 중심에서 '강의 또는 연구전담'으로 확대됨.

o 연봉 인상

현재는 법정 주간수업시수(9시간) 기준 1인당 연봉이 1148만원으로 최저생계비(1635만원)에도 못 미치지만 국립대의 경우 매년 1만원씩 시간당 강의로 단가를 올려 2015년에는 2498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임.

- 국립대 :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로 단가를 올해 4만 2500원에서 5만 2500원으로 올림. 2015년까지 9만 2500원에 도달하도록 매년 1만원씩 인상할 예정임. 교과부는 이를 위해 정부예산안 123억원을 확보해둔 상태임.
- 사립대 : 적정 수준의 강의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권고. 대학의 시간당 강의를 매년 공시 의무화.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3) 기타 방안

o 연구비나 강당공동 연구실 지원

o 보험 가입 지원 : 국립대에 근무하는 강사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계획

마. 현실적 문제점과 교수노조의 대안⁵⁾

(1) 국립대 :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의료 인상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강사료 부담으로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는 역효과가 벌어지고 있음.

(2) 사립대 : 아직 강의료 인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3) 교수노조의 대안

o 국가교수제 도입 주장.

o 시간강사 문제를 처우개선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심각한 불평등과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음.

o 순차적으로 3만명 정도를 대학교원 국가 풀(pool)에 등록시키는 국가교수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5) "시간강사 처우개선' 현실적인 처방 급하다," 11.1.6, 강원일보.

4. 기타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상의 대학 관련 개정안

- (1) 대학에서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 방법의 명확화⁶⁾
- (2) 간호사 양성 과정의 수업 연한 확대 및 학사 학위 수여 근거 확보
- (3) 한국외교아카데미의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 연한의 근거 확보
- (4)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수여 근거 확보

5. 국회와 정부의 대학의 자율성 제한 및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학 등록금 및 대학입학 관련 자율성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만한지에 관한 전문가 검토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6)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 위원구성현황 -

(2011. 1. 1 기준)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26인)		
구 분	대 학 명	성 명
위원장	국민대	이 성 우
부위원장	이화여대	김 선 욱
위 원	경북대	함 인 석
	경성대	김 대 성
	금강대	성 낙 승
	금오공과대	우 형 식
	동의대	정 량 부
	목포대	고 석 규
	백석대	하 원
	부경대	박 맹 언
	상명대	이 현 청
	상지대	유 재 천
	서강대	이 종 욱
	서울시립대	이 상 범
	숙명여대	한 영 실
	순천향대	손 풍 삼
	신경대	송 문 석
	아주대	박종구(직대)
	우석대	라 종 일
	인천대	안 경 수
	전남대	김 윤 수
	중원대	홍 기 형
	차의과학대	박 명 재
초당대	김 병 식	
한국성서대	강 우 정	
한밭대	이 원 목	
자문교수	서울교대	허 종 렬
	연세대	전 광 석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좌 장 : 이영선 위원장 (한림대학교 총장)

발 표 : 송기창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김병주 교수 (영남대학교)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10.11.11, 교과부)의 평가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I.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 정부는 고등교육을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교육분야로 규정하여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 수립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해옴.
-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고등교육투자계획을 밝힌 것은 2007년 6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학총장회의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임.
 - 2008년에 고등교육투자 1조원 확대하고, 계속하여 2009년 1조원, 2010년 2천억원, 2011년 3천억원, 2012년 1천억원을 추가로 확대하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56%('05 기준)에서 2012년에 45%로 낮추겠다는 성과목표까지 제시함.
 -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투자분 1조원 중 4천억원 이상 삭감되어 2008년 고등교육예산 증가는 6,552억원에 그쳤으며, 2009년에 5,15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2,679억원이 감소하여 자연증가분을 무시해도 2010년도 고등교육예산은 2007년보다 9,026억원 증가에 그침.
 - 참여정부의 고등교육투자계획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시행되지 못함.
- 2010년 1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등록금상한제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삽입하는 대신, 정부는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2010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수립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6항에 근거한 것임.

II.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의 개요

-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이하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내용 구성 : 수립배경, 고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미래 대학의 모습, 고등교육 재정투자 계획, 고등교육 중점 추진과제, 향후 추진계획
- 고등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교육·연구의 낮은 경쟁력: 대학 및 대학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과는 아직 낮은 수준,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취약,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고 교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성과시스템 미흡
 -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 대응성 부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공급에 한계,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학과체제로 인력수급 불균형 야기, 대학 배출인력 및 학과체제의 산업수요 미스매치는 청년 고용 문제 개선을 제약
 - 대학의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 대학 재정수입이 국립대는 국고 보조금(53.2%), 사립대는 등록금(66%)에 편중,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부금 수입, 산학협력을 통한 민간 R&D 자금의 대학 투자 저조
 - OECD 국가 대비 재정투자 미흡: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율은 2.4%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정부 투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에 미달, 우리나라의 학생 1인에게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8,920 \$로 OECD 평균 12,907\$의 69.1% 수준에 불과
- 미래 대학의 모습
 - 미래 환경 변화 전망: 저출산·고령화 ⇒ 대학구조조정 및 특성화 중심 발전전략 필요, 글로벌화 진전 ⇒ 국제 교류협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변화 ⇒ 새로운 국가 핵심 성장분야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 새로운 기술 트렌드 ⇒ 대학교육체제의 유연화 및 융합학문·기술 지원
 - 10년 후 대학의 모습

주요지표		현재	⇒	'20년 목표치
국제 경쟁력 측면	세계 200위권 내 대학 수 (The Times)	4개교		10개교
	SCI 논문수 순위	11위		9위
	SCI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30위		20위
교육 및 재정 여건 측면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33명		17명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8,920		\$18,716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비율	54.7%		40% 이하
교육 성과 측면	청년(15~29세) 고용률	40.5%		45%
국제화 측면	외국인 교원수	4,957명		10,000명
	외국인 학생수	83,768명		150,000명

- 대학의 발전 방향: Ivy-리그에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 세계 속의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학부중심대학 육성, 지역산업과 상생하는 산학협력 활성화 지방대학 육성,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전문대학 육성
-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
 - 정부 재정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고등교육 부문 예산의 연차적 확대('10년 7.5조 → '20년 15.8조~16.9조, 정부예산 대비 '10년 2.6% → '20년 3.4%~3.6% 수준으로 확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 대학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양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 R&D 자금 유인 확대, 기부금 유치 확대 및 운용 투명성 제고
 -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의무한도 완화 및 자체영리행위 허용 등), 일몰기한 도래 조세감면 조항 기한연장 추진, 대학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 고등교육 재정투자 전략
 - 대학별 특성화 유도: 학교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별 특성화 유도, 침체된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의 특성화 중심 역량강화 유도
 - 학생 및 연구자 단위의 지원 확대: 간접지원 방식을 통해 학생 및 연구자 확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 유도
 - 고등교육 질 관리 및 규제 완화: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질 관리로 고등교육 여건 및 성과 향상 유도, 규제완화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고등교육 중점 추진과제
 - 고등교육 시스템 선진화: 국립대 법인화를 지속 추진하며 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통해 총장 책임경영체제 강화, 현행 국립대 호봉제를 교육·연구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누적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효율성 제고
 -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 개선: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자발적 퇴출경로* 마련 및 엄격한 대학원 질 관리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대학 자체평가, 외부 기관 평가·인증 제도 정착 및 대학 정보공시제도 효율화, 고등교육 대외 개방 확대로 외국교육기관과 경쟁을 통한 질 관리
 - 학생 선발 체제 개선: 개개인의 소질·특성·잠재력을 고려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계 정착, 「한국대학교육협

- 의회법」 개정을 통해 대입과 관련한 대교협 중심의 대학 자율 규제체제 확립
-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연구역량 우수대학 및 우수 석박사 과정생 집중 지원, 우수 외국인 교수 유치 및 국내외 연구협력 활성화, 미래 선도기술 분야 중심 산학연 연구협력 강화, BK21 사업은 '13년 이후 종료되며 WCU사업 개편 및 개인단위 지원 확대
 - 학부 교육역량 강화: 융합학문 조류와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학사구조로 재설계 유도, 다양한 교수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통한 교수여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제 교육협력 활성화, 선진화된 대학 정보화서비스 체제 구축,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규모 확대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사업을 신규 도입
 - 대학의 R&D 역할 확대: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강화 및 지원 다각화,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의 주도적 역할, 개인연구 지원사업, 집단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산업단지, 지역 산업체 수요에 기초한 학과 개편,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지방대학생 취업 지원 활성화, 지방대학, 지역 산업체, 지역 연구기관 간 연계, 기존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연계, 지방대학 대상 브랜드 사업으로 재편
 -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 산업 수요에 맞춘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전문대학 육성,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글로벌 허브로 육성,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강화, 전문대학 성인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신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신규로 전문대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도입
 -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확대, 개개인의 소질, 특성, 잠재력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 대학의 성인대상 평생교육 기회 확대,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입학사정관제 정착 지원
 - 미래 유망분야 창의인재 양성: 지식기반 첨단융복합 시대를 선도할 핵심 창의인재 양성 추진, 미래 산업수요전망에 따라 대학별로 강점분야 중심 전문대학원을 육성하는 등 고급인력 양성 확대, 의료, 법률, 경영·금융·물류 전문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창조적 지식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인문사회 연구인력 양성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정례협의회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방

안을 논의하고, 교과부-대학-전경련 등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Ⅲ.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 의의: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 고등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성격
 -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11조제6항은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이고, 제11조의 핵심내용은 등록금상한제라는 사실이며, 제6항의 취지는 등록금상한제를 강제 부과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대학재정 결손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라는 데 있음.
 -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핵심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금상한제 실시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수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백화점식으로 종합적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담고 있어서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초점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등록금상한제 실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는 사업비 결손이 아니라 경상비 결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초점은 신규사업발굴이나 사업재편, 고등교육시스템 개편이나 투자효율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 및 재원배분방안 마련에 두어야 할 것임.
 - 새로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발굴이나 사업 재편, 고등교육시스템 개편이나 재정투자 효율화는 매우 필요한 과제지만,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핵심과제는 아닐 수 있음.
 -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핵심과제는 경상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과 재원배분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봄.
 -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막연한 재원소요 추정방식 보다는 등록금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대학재정 수입 감소액을 먼저 추정하고 감소액의 몇 퍼센트를 국가가, 어떤 재원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계획 속에 포함시켰어야 함.
- 향후 관계부처 정례협의회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

겠다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교과부의 재원확보방안이 무엇인지조차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함.

-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주체가 대학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원인과 실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교육·연구의 낮은 경쟁력,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 대응성 부족, 대학의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 등은 고등교육재정 투자를 게을리 한 국가의 책임을 대학 탓으로 돌리는 처사로 보임.
 -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잘못 지적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대학의 문제보다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투자부족의 문제를 반성했어야 한다는 것임.
- 10년 후 대학의 모습에서 2020년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목표치가 산출된 근거도 불분명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소요와 정책적 대응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예컨대,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54.7%에서 4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IV.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보완방향

- 고등교육재정 투자 부족의 원인 분석
 -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 부족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상한제 실시로 초래될 수입감소 규모 추정 및 지원규모 설정
 - 고등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취지가 등록금상한제를 보완하는 데 있는 만큼, 등록금상한제 도입으로 초래될 대학재정 수입 감소 예상액을 먼저 시뮬레이션 하고, 결손액을 추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할 비율과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을 제시한 후, 소요재원규모를 추정하여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고등교육재원 확보방안의 구체화
 -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재정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책이 제시되어야 함.
 -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고등교육세 신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구체

적인 재원 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대학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양화는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전략이 아니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상한제에 대한 보완

- 고등교육법 제11조제4항은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음.
- 2011학년도의 경우,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일환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도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제11조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임.
- 이는 대학등록금상한제로 대학을 1차 규제한 후, 행·재정적 지원을 무기로 대학등록금상한제마저 다시 규제하는 결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립대 교수의 봉급은 5.1% 인상했으면서도 사립대 교수 봉급은 3년째 동결하라는 이율배반적이고 형평성을 결여한 행정지도임.
- 따라서 고등교육법 제11조제4항을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의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교과부의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학재정 문제와 개선방안

김병주(영남대)

I. 서론

- 대학재정은 확보와 배분, 운영의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재원은 크게 학생등록금과 정부지원금, 민간지원금(기부금 포함), 자체수입의 네가지로 구분된다.
 - 물론 모든 재원이 이 네가지 분류에 분명하게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재원은 이 네가지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다.
 - 이 네가지 재원이 모두 골고루 확보될 때 고등교육비의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경우 이 네가지 범주의 재원중에서 대학등록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은 정부지원금이다.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에 정부지원금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다.
- 배분은 정부가 개별대학에 배분하는 문제와 개별대학이 단위부서에 배분하는 문제로 구분된다. 운영은 개별대학에서 확보되고 배분된 대학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우리 나라의 대학재정은 풍족하지 못하며 다소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기서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단위교육기관 차원에서 대학재정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국립대학 재정의 현황과 문제

- 대학재정은 예산으로 구체화된다. 예산이란 일정기간의 교육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예정금액을 숫자로 표시한 계획서이다. 수입은 재원의 확보와 조달을 의미하며 예산상 세입으로 표시한다. 지출은 세출로 나타나는데 대학교육경비의 기능별 배분과 집행을 말한다.
- 국립대학의 회계는 적용 법령에 따라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나누어져 있다. 국고회계는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심의 - 확정으로 성립되는 회계를 말하며,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각종 규칙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비국고회계는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로 기성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 일반 국가기관의 재정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제도는 많은 문제점

을 드러내고 있다.

- 첫째, 국립대학 재정제도는 교육 및 교육재정의 장기성, 자율성, 성과측정의 곤란성과 같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운영의 장기성과 계속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을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성회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이원적인 운영으로 회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며 대학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둘째, 국립대학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 행태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재정운영의 공공성, 효율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예산의 편성과 집행 절차를 관련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방식은 오히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로 흐르고,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비 총액의 영세성이다. 이 문제는 사립대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1. 예산편성과정상의 문제점

가. 일반회계의 편성·심의과정상의 문제점

- 품목별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통제 지향적인 정부예산제도를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국립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국고회계의 예산 편성·심의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립대학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 예산편성기준이 비현실적인 점, 대학 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 등이 있다.
- 국립대학은 대학 발전의 촉진 및 개혁을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중·장기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의 경우에 발전계획이 수립되지만 했지 체계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끝나 버리거나 시행 과정에서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대학 발전계획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발전계획의 비현실성, 전문인력의 부족, 대학행정능력의 미비, 대학조직의 취약성, 대학사회의 갈등 등의 많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재원의 부족과 함께 대학 발전계획 수립주체와 예산결정의 주체가 서로 상이한데 있다.

나. 기성회계의 편성·심의과정상의 문제점

- 기성회계는 예산편성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고회계와는 달리 대학 자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예산편성 절차의 복잡성

- 국립대학의 기성회계는 사립대학과는 달리 기성회계에 관한 뚜렷한 결정 주체가 모호한 실정이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기성회계의 예산편성 과정에 가능한 참여하여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런 움직임은 기성회계 예산편성과정을 민주화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여 객관적인 편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 또한 학과간 부서간 집단이기주의의 행태로 나눠먹기식 또는 상호간섭적인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2) 기성회 이사의 전문성 부족

- 기성회계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학생들의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 이사회가 이 과정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대학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위원인 기성회이사들은 대부분 대학재정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방대한 규모의 예산안에 나타난 사업의 성격, 정책 방향, 중요성 등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2. 예산집행과정상의 문제점

- 국립대학의 국고회계 예산집행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예산집행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예산 집행상에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예산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 결여

- 국립대학은 일반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 예산 집행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예산집행상의 신속성 결여

- 국립대학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신속성 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예산제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몇 가지 개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전반적인 예산 절차의 성격은 통제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산 및 회계감사 과정상의 문제점

○예산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결산 및 회계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품목별예산제도 하에서의 결산은 예산대로 집행한 내역과 수치를 보고하는 과정으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 2) 국립대학에 대한 회계감사가 감사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5~7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상의 개선요인이 다음연도 예산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국립대학에 대한 감사기관의 회계검사가 경영의 합리성보다 합법성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학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감사나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 4)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대학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나 평가를 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인해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의 개선책이 다음연도의 예산과정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5) 대학재정의 이해 당사자인 교수나 학생들은 예산편성과정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예산과정이 종료되는 결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편이다.
- 6) 기성회감사가 실시하는 기성회계감사가 기성회감사의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 부족으로 형식적인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성회이사회의 결산심의도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이해부족으로 형식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 7)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는 국고지원 예산이나 기성회계에 대한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학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4. 회계체계상의 문제점

○경직적이고 통제 지향적인 국고회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성회계를 도입하고 국립대학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원적인 회계체계 운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 국고지원 규모의 영세성

○국립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 부담원칙 고수로 학생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고지원의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재정은 등록금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국고지원의 규모가 매우 영

세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미약한 재정지원은 국립대학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열악한 대학교육 여건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나. 기성회계 예산 구조의 편중성

- 기성회계 예산은 그 세입과 세출의 구조에 있어서 심한 편중성을 갖고 있다. 우선 세입 면에서 본다면, 기성회계의 세입이 기성회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성회계 세입예산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정부가 고등교육의 수익자를 학생 개인으로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학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도록 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부족액을 기성회비를 인상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성회계의 절대적인 수입원이 되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학생들과 기성회비 인상 문제로 갈등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음은 세출 면에서 대학은 고도의 교육·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집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기성회비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다. 특히 인건비의 대부분은 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고정적인 급여성 경비로서 매우 경직적인 경비이다.
- 기성회계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성회계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이나 운영비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행정 낭비 초래

- 국립대학 국고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적용 받고 있고, 기성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회계와 기성회계의 예산주기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립대학은 예산주기가 서로 상이한 이원 회계체계 운영으로 전체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운영경비를 이중으로 편성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발전계획과 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 특히 기성회계는 대학예산을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시된다. 또한 국고회계

와 기성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는 예산집행과 결산과정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하며, 성과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Ⅲ. 사립대학 재정의 현황과 문제

1. 재무구조상의 현황과 문제

가. 교육재정 총량규모의 영세성

○기본적으로 사립대학 교육비의 절대 규모가 부족하다. 국내 대학의 학생당 교육비는 주요 외국 대학의 1/2~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제난 가중으로 학부모의 실직소득이 감소되고, 미취업 졸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학진학의 매력도 급격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적지 않은 사립대학에서 등록포기자 및 휴학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등록금 인상의 억제와 외부기부금의 감소 등으로 대학의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사립대학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교육재정 총량규모의 영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나. 세입구조의 취약성

○사립대학 세입구조의 중요한 문제는 등록금의 비중이 크고,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영세하며,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립대학 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첫째, 사립대학의 운영수입이 등록금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운영수입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8%로 사립대학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향후에는 외부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감소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사립대학 운영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며, 대학의 규모에 따라 기부금의 액수와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규모대학일수록 기부금의 비중도 큰 경우가 많은데, 대규모대학의 운영수입은 그 절대액수가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을 고려할 때, 기부금 절대액수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 셋째, 사립대학의 운영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은 물론, 지역별로도 소수의 지역 대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고보조가 지출되고 있다.
- 넷째, 사립대학의 운영수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음은 물론, 지역별·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평균적으로 대학법인은 법정경비의 60%밖에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익사업의 이익률이나 수익사업 이익의 법인전출 실적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도 문제지만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이 매우 낮은 토지, 임야 등의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연간수익률이 1% 내외인 토지와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57.6%에 이른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교법인 전입금을 통해 사립대학 재정문제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무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 다섯째, 사립대학 운영수입에서 교육부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그동안의 대학재정은 총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등록금, 10%대의 전입금, 4~5%대의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인 대학재원에서 눈을 돌려 보다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육부대 수입이다. 미국에서 일부 공과대학 중심의 우수대학들은 대학에서 연구하여 획득한 결과와 특허를, 대학내에 설립한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이를 판매한 수입으로 전체 대학재정의 60~70%를 충당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교육부대수입 비율은 총 운영수입의 2.4%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진국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overhead cost 등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다.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큰 세출구조

○사립대학 재정 세출구조의 문제의 하나는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향후 예견되는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고정비적인 인건비 부담의 증가는 사립대학 재정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세출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크면 예산운영의 융통성이 그만큼 줄 것이며, 운영의 창의성이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재정관리의 현황과 문제

가. 교육목표 및 계획과 재정운영의 연계 미흡

○교육목표가 달성되도록 교육사업을 마련하고, 이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에 의한 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여도 교육목표에 적절하지 못한 사업을 마련하고, 또 그 사업에 맞지

않게 과소 또는 과대 예산을 투입한다면 당초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대학의 재정운영은 대학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분석·평가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많은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LIBS) 하에서는 교육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나. 효율성과 자율성이 결여된 예·결산의 운영

1) 법규 및 행정적 규제의 과다

- 대학재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법적·행정적 규제가 많은 데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도 많다. 국·공립대학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립대학은 그것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의 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립대학은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이지만,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의 포괄적 감독 아래서 법규적·행정적 규제를 받고 있다.

2) 획일적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

- 대학의 재정운영은 개별 대학의 역사와 특성을 감안하여 상이한 제반 사업을 한정된 재정 규모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예산은 감독 관청인 교육부에서 작성한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80년대 후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사립대학의 재정적 자율권이 많이 신장되긴 했으나 오랜 타율의 관행으로 새롭고 의욕적인 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도 정부의 예산 기준에 어긋나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사립대학 재정운영은 여전히 대학의 개별적 특성에 무관하게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정도가 높으며 따라서 재정운영의 다양성·개별성·특성화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전년도 답습의 기계적 예산편성 잔존

- 적지 않은 대학에서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는 기계적 예산편성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년도 예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관례가 오랜 전통으로 고착되어 온 것이다. 예산은 영(零)을 근거로 하여 매년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항목과 금액을 토대로 약간씩 불러 가는 점증주의 형태가 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전년도 답습방식은 예산편성에서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각 기관별 또는 학과별 예산배분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4) 합리성보다는 합법성에 치중된 회계중심의 재정운영과 감사

- 지금까지의 대학재정에 대한 감사는 교육부의 감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감사방법이 주로 회계의 합법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경영의 합리성보다는 회계적인 합법성에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재정은 예산의 항목별 합법성에 치중하므로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도 한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추가로 예산 반영이 어려워 모처럼 좋은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현재와 같은 합법성 중시 풍토에서는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 사립대학의 경우 수탁회계 등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학교법인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으며 관할청인 교육부의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현행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에서는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회계 감사권을 갖고 있어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재산과 수익사업, 학교경영에 관한 회계 등에 대하여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별 예산제도

-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해 재정을 운영한다. 이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투자는 1년이라는 고정된 기간에 한정된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연속적인 투자인 데도 정부의 회계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립대학 재정운영을 장기적 안목에서 꾸려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즉, 교육은 장기적인 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운영되는 데도 이를 1년의 단기예산, 그것도 품목별 예산운영에 치중함으로써 경직적인 운용,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회계상의 책임만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의 사업연계성, 목표 관련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6) 예산운영 평가체제의 미비

- 예산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를 예산의 편성과 배분에 반영하지도 않고 있다. 결산과 감사가 있지만, 그것은 예산을 본래 계상한 대로 집행했는가 여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성과를 평가·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산항목에서 불용액이 생기면 차기 년도에 삭감요인이 되는 등 현행 결산 평가방식은 문제가 있다. 예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새로운 예산은 배분된 예산의 효과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 효율성이 부족한 재정관리

- 대학재정관리의 중요한 목표는 주어진 교육목표와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원활히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의 약 80%에 달하는 경직성 경비(교직원 인건비, 교육운영경비, 학비감면액, 관리경비 등)의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운영의 합리화 폭은 매우 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약 20%에 해당하는 경비조차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 비합리적인 재정운영방식의 예로 관리직이 전문화·정예화되어 있지 않고, 사무처리가 표준화·자동화되어 있지 않으며, 고정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시설 활용도가 낮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라.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부족

- 그 동안 대학의 감사는 주로 경영의 합리성보다 회계의 합법성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학재정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감사나 평가가 미흡하다. 또한, 대학재정운영에 대한 감사나 평가를 받더라도, 대부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인해 대학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가 차기 대학재정운영에서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학재정운영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교수, 학생, 직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예산편성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예산의 집행이 대부분 학과 수준보다 중앙단위, 본부,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현장의 수요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산절차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대학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주요 대학의 수입/지출 구조 분석

1. 국내 주요 대학의 수입/지출구조

가. 서울대학교의 수입/지출 구조

- 일반회계, 기성회계, 발전기금 등의 3개의 회계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와 구조가 <표 1>에 정리되어 있음.
- 서울대학교 2006년 총 예산 규모는 4,750억원 규모임.
-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인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합이 전체 서울대학교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사립대학교들의 평균 등록금 의존률이 65%보다는 월등히 낮음이 관찰됨.

<표 1> 서울대학교 세입 예산 구조, 2006년

예산 항목	금액	전체예산대비 비중
국고	200,038,674	42%
입학금 및 수업료	21,392,380	
기성회	185,130,873	39%
기성회 회비	125,992,491	
발전기금	89,870,744	19%
(수업료+기성회비)	147,384,871	31%
합계	475,040,291	100%

출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세입/세출 구조

○등록금 수입 의존률이 사립대학교 평균인 65%보다는 낮은 50%내외이며, 우리나라 사립대학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입 및 기부 수입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투자와 기타자산 수입은 전체 수입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여전히 외국 유수대학에 비하여서는 상당히 낮은 규모임.

<표 2>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수입/지출 구조, 2006년

구분	연세대		고려대		
자금수입	등록금수입	305,519	43.2%	302,119	49.23%
	전입 및 기부수입	161,682	22.9%	122,927	20.03%
	교육부대수입	10,774	1.5%	11,364	1.85%
	교육외 수입	29,223	4.1%	15,444	2.52%
	투자외 기타자산수입	38,180	5.4%	15,552	2.53%
	고정자산매각 수입	-		17	
	고정부채입금	2,726	0.4%	-	
	미사용전기이월자금	8,667	1.2%	26,129	4.26%
	산학협력단 수입	150,000	21.2%	120,086	19.57%
합계	706,771		613,638		
자금지출	보수	283,100	40.1%	181,160	29.52%
	관리운영비	67,834	9.6%	53,828	8.77%
	연구학생경비	98,352	13.9%	130,702	21.30%
	교육외비용	2,731	0.4%	9,392	1.53%
	전출금	-		-	
	예비비	3,888	0.6%	4,093	0.67%
	투자외 기타자산지출	48,256	6.8%	17,202	2.80%
	고정자산매입지출	47,137	6.7%	96,221	15.68%
	고정부채 상환	3,930	0.6%	16	
	유동부채 상환	-		938	0.15%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541	0.2%	-	
	산학협력단 지출	150,000	21.2%	120,086	19.57%
	합계	706,771		613,638	

출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2. 미국 주요 대학의 수입/지출구조

○오랜 전통과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대학교의 수입/지출 구조를 보면,

- 먼저 총 지출액을 보면, 하버드 대학의 경우 27억불(약 2.5조)로 우리나라 상위대학들에 비하여 5배 규모임.
- 수입중 등록금 의존률이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교 평균인 65%과 국립대인 서울대의 30%보다도 낮은 20%내외 이며,
- 적립금 운영 수입을 학교 운영비에 출연하여 사용하는 금액이 31%와 17%를 차지하고 있음. 적립금 출연 비중이 높은 것은 적립금 자체의 규모가 매우 크며 또한 적립금 운영 수익률이 매우 높음에 기인한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사립대학교의 적립금 규모와 운영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하버드 대학의 경우 2005년 현재 약 25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적립금 원금과 운용수입중 8,000억원 가량을 경상운영비로 출연하고 있음.
- 하버드 대학의 경우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기금의 규모가 년평균 20% 성장하여 50억불에서 260억불로 5배 이상 성장하였음.

<표 3> 하버드 대학교의 수입과 지출 구조, 2005-2006년

총수입 (Total Income: \$2,800,936)	적립금 사용	Endowment Income Distributed	31%	\$868,290
	학생수입 (등록금-장학금)	Student Income less Scholarships Applied to Student Income	21%	\$588,196
	정부 사업 수입	Government Grant and Contract Receipts	18%	\$504,168
	경상 기부금	Current Use Gifts	7%	\$196,065
	민간 사업 수입	Non-Gov't Grant and Contract Receipts	4%	\$112,037
	기타 수입	Other Receipts	19%	\$532,177
	합계	total		\$2,800,936
총지출 (Total Expenses: \$2,757,373)	강의	Instruction	28%	\$772,064
	연구	Research	23%	\$634,195
	부설 서비스	Auxiliary Services	12%	\$330,884
	기관 유지	Institutional Support	16%	\$441,179
	학생 서비스	Student Services	4%	\$110,294
	장학금	Scholarships/ Fellowships	3%	\$82,721
	학술지원	Academic Support	8%	\$220,589
	도서관	Libraries	6%	\$165,442
합계	total		\$2,757,373	

출처: 하버드대학교 홈페이지

<표 4> 하버드 대학의 운영수입 구조 변화, 1995년-2005년

연 도	등록금	기금지원금	기부금	연구용역비	기타
1995	26%	21%	7%	24%	22%
2005	21%	31%	7%	22%	19%

출처: 채권연구원(2005)

<표 5> 스탠포드 대학교의 수입과 지출 구조, 2005-2006년

수입 (Sources of Funds)	연구비수주	sponsored research	37%
	적립금 사용	endowment income	17%
	기타 투자 수입	other investment income	3%
	학생 수입	student income	18%
	병원 운영	health care services income	10%
	경상 기부금	expendable gifts	4%
	기타 수입	other income	11%
지출 (Expenditures)	급여와 직원후생	salaries & benefits	53%
	운영비용	operating expenses	31%
	스탠포드 리니어 가속센터	Stanford Linear Accelerator Center	11%
	학자금 지원	financial aid	5%

출처: 스탠포드 대학교 홈페이지

- 운영 수입에서 연구사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각각 22%과 37%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음. 정부의 직접적인 경상비 지원은 존재하지 않고 연구사업 지원만이 존재하며, 하버드 대학의 경우 정부의 연구사업지원 액수가 매우 큰 5억불에 이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III-6> 세계 우수 대학 재정 수입 비교

구분	서울대	Harvard	Stanford	UC Berkeley	UM Ann Arbor	UW Madison
정부 지원금	246,667 (48.1%)	-	-	359,702 (31.4%)	357,273 (20.3%)	428,651 (30.0%)
연구비	96,773 (18.7)	505,127 (27.7%)	757,945 (46.5%)	385,319 (33.7%)	559,888 (31.7%)	504,719 (35.7%)
기부금	58,542 (11.3%)	373,085 (20.5%)	163,354 (10.0%)	29,125 (2.5%)	29,625 (1.7%)	16,745 (1.2%)
등록금	88,015 (17.0%)	490,651 (26.9%)	310,568 (19.0%)	236,218 (20.6%)	487,908 (27.7%)	236,078 (16.7%)
교육사업 (수입대체경비)	1,713 (0.3%)	155,094 (8.5%)	127,357 (7.8%)	26,537 (2.3%)	95,180 (5.4%)	89,760 (6.3%)
수익사업	-	220,765 (12.1%)	182,345 (11.2%)	73,069 (6.4%)	206,520 (11.7%)	111,660 (7.9%)
기타	23,810 (4.6%)	77,731 (4.3%)	89,570 (5.5%)	34,375 (3.0%)	27,353,394 (1.6%)	27,778 (2.0%)
계	518,520	1,822,453	1,631,139	1,144,345	1,763,748	1,415,391
학생당 예산	16.3	101.1	131.6	41.4	52.4	41.3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3. 시사점

○지금까지의 외국의 주요 대학들의 수입/지출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은 등록금 수입이 대학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사립대의 경우 20% 내외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률보다 매우 낮다는 점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높은 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외국 대학에서 등록금의 대체적인 수입원들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음. 등록금의 대체적인 수입원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대규모 기부금으로 적립된) 적립금에서 대학 운영을 위해 출연된 금액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이는 적립금 자체가 매우 크고, 적립금 운영수익률이 매우 높음에 기인하는 것임. 채권연구원(2005)에 따르면, 하버드대학의 2005년 회계기준 기금의 규모는 26조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금을 지니고 있는 이화여자대학의 경우에 비하여서도 50배에 이르고 있음. 또한, 기금의 운영수익률이 19.6%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매우 낮은 기금 운영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음.
- ②정부와 민간으로부터의 연구사업 수입이 큼.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는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경상비 지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주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원칙하에 경쟁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음.
- ③병원이나 수익사업 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음. 병원, 컨설팅, 기술연계 기업 등의 수익사업들이 보다 장려될 필요성이 있음.

V. 개선방안

1. 재정의 확보

○대학은 실현 가능한 장·단기 재정확보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확보된 재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학 재정의 원천은 등록금, 재단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등록금 의존비율은 높고, 등록금 이외의 자구적 노력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학등록금 이외의 다각적인 자구적 재원확보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확보 계획에 등록금을 제외한 재단전입금과 기부금 등의 자구적 노력이 요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구체적인 자구적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등록금 수준의 고저에 따라 학생당 교육비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등록금 이외에 재단전입금의 확충, 대학발전기금 모금, 산학연계 활동을 통한 연구비 유치, 독지가들의 장학기금 유치, 유력기업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후원활동 유치 등 다양한 대학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있으며, 그 성과여부에 따라 학생당 교육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들이 이처럼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산학협동을 통한 대학자체 수익사업 추진과 민간자본유치 등의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민자유치는 대학재정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노력여하에 따라 대학자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도 있다.
- 일부 대학에 추진하는 사례와 같이 민간 건설업체에게 기숙사를 신축토록 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주어 기숙사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대학은 등록금 이외의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이러한 재원으로는 대학발전기금 모금, 국가 및 산학 연계 활동을 통한 연구비 유치, 독지가들의 장학기금 유치, 유력기업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후원활동, 국고보조금 확대 유치 등이 있을 수 있다.
- 특히 최근에는 교육부의 일상적인 국고보조 이외에도 교육부의 다양한 평가에 의한 중점지원은 물론 교육부 이외의 타 부처에서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대학발전의 커다란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학생등록금 이외에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의 법인전입금, 외부기부금, 국가정책사업비 확보, 자체 수익사업의 운용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구적인 안정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사립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총 세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이나 기부금, 자체수익 등의 다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국고보조를 받는 국립대학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립대학과 대등한 수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립대학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 대학의 안정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는 장단기 재정확보계획의 수립·추진 여부, 운영수익 증가율, 등록금 증가율, 법인전입금 증가율, 기부금 증가율, 수익용 기본재

산 증가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재정 운영체제의 적절성 확보

○대학의 재정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예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학의 예산은 교육계획이나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대학의 예산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예산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의 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새로운 사업의 반영 및 사업 우선순위의 재확정을 위해서 사업심의를 매년 새롭게 하도록 하며, 예산편성에 있어 경제성 개념을 도입하여 명확한 비용·효과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입각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 재정운영체제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과 절차의 합리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개성, 재정(운영)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편성과정의 합리성 확보:

- 사립대학 예산의 편성과정은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기획실(처) 등의 대학본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과 해당기관에 통보하면, 각 단과대학은 단과대학 교수회의 또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단과대학의 예산안을 작성·제출한다.

- 제출된 예산안은 기획위원회(또는 재정위원회 등), 교무위원회 등에 상정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된다. 총장은 결정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특례규칙(이하 사학회계특례규칙이라 함) 6조 3항).

- 이 과정에서 대학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립대학 예산은 한정된 수입 범위내에서 지출규모와 행태를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므로 매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입예산 규모의 파악과 지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개성:

- 사립대학의 예산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회계특례규칙에 따라 집행되고 운영된다. 일단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 및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산편성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렇게 집행된 예산은 결산을 통하여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가 작성된다. 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작성된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총장은 심의·확정된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 대학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에 대한 검증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결과나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류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공개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대학재정은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중요도와 사회적 책무성 및 공신력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명료하게 공개되어야 그 합목적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에 대학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은 공개되어 대학 전체 구성원이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평의회’,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동창회’ 등에 대학 재정 운용이 공개되어야 하고 이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학재정운영 면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외부감사제도와 재정운영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재정운영의 감사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것을 새로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대학재정운영에서 책무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 재정(운영)위원회의 활동:

- 대학은 대학재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운용에 관한 일정한 역할을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의 기능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재원확보를 위한 관련활동, 재원별 재정운용에 관한 지침과 기준 작성,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 등이다. 특히 매년 재정 및 예결산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feedback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의 예결산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운영)위원회의 활동실적은 대학의 재정운영체제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대학재정 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적절성

- 대학 재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수시감사, 정기감사, 외부감사제도,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재정의 누수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사업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 사업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폐지나 지속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부감사의 결과와 심사분석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담당자의 책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재발방지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합리적인 통제체제를 갖추면 경직성 경비의 절감율을 높이고 대

학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아울러 대학 하부 단위기관·부서별 또는 사업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운영평가 또는 심사분석제를 발전시켜 재정운영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운용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새로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게 된다. 이 제도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운영평가 및 심사분석의 과학화, 단위기관·부서·사업별 수입과 지출의 비교 분석, 단위기관·부서·사업별 예산운영의 효율성 분석, 그리고 단위기관·부서·사업별 평가를 통한 차등 재정 지원(단과대학, 연구소, 부속기관, 학부 및 학과 평가 등)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를 통한 차등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대학은 앞으로 단위부서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참신한 기획 및 제도를 도입하는 학과(부)에 일정 범위내에서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등 예산 배정예선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초에 수립한 단위부서별 예산 운영계획과 실적을 평가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실적과 연계된 예산배정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효과적인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체계가 있어야 하고, 그 평가에 의하여 공정한 보상, 또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된다.

3.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 대학은 대학의 교육계획과 연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은 나름대로의 장기발전계획, 중·단기계획, 당면중점과제의 추진에 합치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대학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편성된 예산과 그 예산의 집행과정과 실적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 즉, 예산통제제도(budgetary control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예산통제제도는 본래 기업예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기업의 모든 경영관리활동을 수치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경영관리방법이다. 이러한 예산통제제도를 대학의 예산제도에 도입할 경우 대학의 재정(운영)위원회 등의 역할은 더욱 중대한 것이다.
-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 첫째,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지출항목의 계상과 같은 예산여유(budgetary slack)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

측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약간의 예산여유는 허용할 수 있지만, 허용된 예산여유는 예산집행과정의 심사강화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 둘째,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지출이 본래 의도한 대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직의 전문화, 대학행정사무의 표준화·단순화·자동화를 유도하고 자율성과 분권화를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 셋째, 지출된 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계획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분석결과는 차기의 예산편성시 피드백되어야 한다.

4. 재무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

- 대학재정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사립대학이 당해년도 운영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면서 균형 있게 학교를 운영하였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재원에서 다양하게 운용된 세출항목이 총세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하고 건전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대학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의 바탕위에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인지,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고정자산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송기창, 김병주, 백정하(2008). 대학재정확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경환, 김병주 외(1997). 교육재정운영평가.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병주(1997). 등록금 책정방법의 개선을 통한 대학등록금의 적정화. 한국교육개발원 워크숍자료집, 1997.5.23.
- 김병주(2000). 사립대학 재정운영의 효율화. 교육재정경제연구, 9(1).
- 김병주(2006a). 대학등록금 정책의 기본철학과 책정모형.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2006.11.16.
- 김병주(2006b).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및 재정규제 완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6.9.8
- 김병주(2007). 대학등록금 관련 쟁점사항. 대학등록금 책정 개선을 위한 워크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6.25.
- 김병주, 박남기, 송기창(1996).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교육과학사.
- 김병주, 나민주, 유현숙, 이 영(2007). 지자체(공공) 및 민간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방안. 재정경제부 정책연구과제.
- 배병일(2002). 사립대학 수익사업의 법적 문제점. 교육법학연구, 14(2).
- 백성준 · 김병주 · 김효겸(1997). 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송기창(2003). 사립대학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39차 학술대회 자료집.
- 송기창, 김병주, 박정수, 정태화(2007). 고등교육재정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과제 연구.
- 윤정일 외(2001). 대학지원예산구조 및 지원방식 개선연구.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 이 영, 박정수, 김병주, 천세영, 류장수(2006). 고등교육 재정배분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11.
- 이전오, 박정우(2006). 사립대학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06.8.
- 이종재 외(2000).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편방안 연구.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 천세영(2005). 한국교육재정 현상탐구 I. 충남대출판부.

- 위원구성현황 -

(2011. 1. 1 기준)

대학재정대책위원회 (33인)			
구 분	대 학 명	성 명	
위원장	한림대	이 영 선	
부위원장	서울여대	이 광 자	
위 원	가야대	이 상 희	
	가천의과대	송 석 구	
	가톨릭대	박 영 식	
	감리교신학대	김 흥 기	
	강남대	윤 신 일	
	건양대	김 희 수	
	경기대	최 호 준	
	경원대	이 길 여	
	경인교대	정 동 권	
	경일대	정 현 태	
	경주대	이 순 자	
	공주교대	전 우 수	
	그리스도대	임 성 택	
	대구가톨릭대	소 병 욱	
	대불대	이 승 훈	
	동명대	이 무 근	
	동신대	김 필 식	
	부산대	김 인 세	
	송실대	김 대 근	
	신라대	정 흥 섭	
	영산선학대	김 희 정	
	예수대	서 광 수	
	을지대	박 준 영	
	인천가톨릭대	김 흥 주	
	중부대	최 희 선	
	진주산업대	김 조 원	
	자문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최 준 영
		한라대	이 정 무
		한북대	강 신 경
		한서대	함 기 선
자문교수	한신대	채 수 일	
	숙명여대	송 기 창	
	충북대	나 민 주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좌 장 : 부구욱 위원장 (영산대학교 총장)

발 표 : 장재옥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의 현안과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재욱

I 변호사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시험 횟수 관련

1. 변호사시험 시험과목 외의 과목에 대한 대책

«현행 문제점»

- 변호사시험의 전문적 법률과목에 해당되는 선택과목에만 수강이 집중되어, 시험과목 외의 과목에 대한 과행우려와 특성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선택과목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등을 위하여”¹⁾ 전문적 법률분야에 대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취지임.
- 그러나 “특성화란 ‘기본적인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르치되 전문적인 것은 각각 다양하게 가르치라’는 요청이므로, 특성화 과목을 국가시험으로 치르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특성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²⁾이 더 설득력이 있음.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변호사시험법 제2조는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 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2항(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에 관한 규정)에 단서를 두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이 전문적 법률분야의 과목외에 대통령이

1)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30면

2) 이동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시험제도의 방향”,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9. 3. 20), 55면.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법률과목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와 같이 일정 전문법률과목의 이수를 변호사시험 응시요건으로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즉 선택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예 : 15 학점) 수강하고, 수강한 과목의 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예 : B°)이 될 것을 변호사시험의 응시요건으로 할 것이 요구됨.

2.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현행 문제점》

-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이후에만 응시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의사고시(1월)등 대부분의 시험과 같이 졸업 예정자들에게도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함. [‘신학용 의원’이 검토한 바 있음]

3. 시험횟수

《현행 문제점》

- 「변호사시험법」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제4조)에도 연1회로 시험횟수를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로스쿨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됨 .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여름 졸업자를 배려하고, 법학사출신자나 외국로스쿨에서의 학점취득자에게 15학점의 범위내 학점인정을 하는 규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며, 외국기관 등에서의 장기연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년에 2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연 2회 실시의 입장을 취한 바 있으며³⁾, 미국에서는 Delaware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연 2회 2월과 7월의 마지막 주에 변호사시험을 실시함.⁴⁾

II

로스쿨 정원 관련 문제

1. 개별 입학정원

《현행 문제점》

-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입학정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
- 입학정원 40명, 50명인 법학전문대학원이 9개, 60명, 70명인 법학전문대학원이 4개로서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50%를 넘어서고 있음
- 인가기준을 중심으로 전문화·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100강좌 이상을 개설해야 하므로, 정원 40-50명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최저 교원 수 20명, 교원 1명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잡고 있음. 편제완성연도 학생수 240명. 최저 입학정원 80명 이상이어야 함

2. 총입학정원

《현행 문제점》

- 2010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000명

3) 김선수,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종합토론문”,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한국의 과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심포지움, 2008. 11. 17), 158면

4) 법무부, 『각국의 법조인 선발 및 시험문제 유형에 관한 연구』, (2009. 5), 41면 이하 참조.

무변촌의 수 : 122개 기초단체 (52%)

제1심 민사본안사건 소송 대리율 : 20% (2008년 현재)

변호사 1인당 제1심 민사본안사건 선임건수: 58.4건 (2008년 현재)

형사공판사건의 변호사 선임율 : 48.2% (2008년 현재)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법률가 수 : 79명 (2005년),

30대 대기업집단에서 고용하는 법률가의 수 : 160명 (2007년)

변호사 1인당 인구 : 5,891명

법관 1인당 변호사수 : 3.95명 (미국 36.66명, 영국 31.88명)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문제점

총 입학정원을 법조계가 사실상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 교육과학기술부장은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총 입학정원의 최저한도 입법에 규정(3,000명부터)

최저기준을 두어 3천명이상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매년 입학하는 학년도(2011년(2013년))부터 5년 동안 별도 입학 총정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최초 입학 년도 이후 6년 동안은 3천명의 입학 총정원에서 매년 200명씩 증원하여 2016(2018)년에는 4천명에 이르도록 하는 안이 요구됨.

《현행 문제점》

○ 법조직역 현황:

변호사 이외에도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임

(단위 : 명, 2009. 12. 기준)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 노무사	손해 사정사정인	공인 중개사	합계
3,519	1,354	8,694	5,925	1,508	5,901	74,227	101,128

- 로스쿨 도입으로 연간 신규 변호사배출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5년 변호사 2만 명, 2020년 3만 명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되고,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등 법조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법조인접직역의 통합방안

법조인접직역 중 기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득권은 인정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되, 장래 법조인접직역 자격취득가능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경과조치를 두어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임

- 법조인접직역에 대한 공감대가 구축되면, 기존의 법조인접직역에 대한 로스쿨 특별과정을 통한 재교육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발전적으로는 로스쿨 정원을 증원하여 모든 유형의 법조인은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조인 배출 그 자체를 늘려야 함

-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원칙에 부합하는 통합방식 제안. 변호사(자격)법의 한 조문을 아래 제시함.

제 00조(법률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의 변호사 자격증 부여)

① 법률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률직역 종사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는다.

② 제1항의 법률관련 자격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무사 자격증
2. 변리사 자격증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③ 제1항의 법률직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1을 의미한다.

1. 국가기관의 법률관련 업무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법률실무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 정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는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5%를 넘을 수 없다.

IV

로스쿨학생들의 신분관련 사항

1.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연령

《현행 문제점》

- 로스쿨 재학생은 만 29세까지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갈 수 있는 반면, 사법연수생은 만 30세까지 지원이 가능함.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재학생의 경우 지원연령을 좀 더 높여야 군 휴학으로 인한 공백 없이 지속적인 학업을 할 수 있음.

2. 로스쿨 재학생의 신분보장

《현행 문제점》

- 로스쿨재학생들은 학생신분으로 인해 방학 중 법원, 검찰, 로펌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사건에 접근하기 어려움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방학 중 실무실습을 하는 로스쿨 재학생(2학년 겨울방학부터)에게 사법연수원생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V

기타현안

1. LLM 도입, SJD 제도개선

《현행 문제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로스쿨안에 법학전문석사 과정외에 별도의 박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학전문석사 과정 이후에 심화과정으로서 이른바 SJD(Scientiae Juridicae Doctor)과정을 로스쿨에서 이수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SJD보다 단기과정이고, 로스쿨이 아닌 다른 형태의 법학공부를 한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로스쿨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LM (Legum Magister)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은 로스쿨졸업자라 하더라도 전문심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고 로스쿨의 특성화·전문화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LLM과정을 두지 않는다면, SJD과정을 이수한 외국의 법학전공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외국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밖에 SJD 과정의 경우,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학전문 대학원 박사과정(SJD)에 입학할 수 없음 : 장학생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미국의 많은 로스쿨에서 LLM과정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무가나 학자지망생이 수학하였듯이, 외국학생의 Inbound 유학으로 국제화를 앞당기고, 우리 법률가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로스쿨에 설치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LLM과정을 두지 않는다면, SJD과정을 이수한 외국의 법학전공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외국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밖에 SJD 과정의 경우,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학전문 대학원 박사과정(SJD)에 입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일반대학원 학술 박사과정(PhD)이 점차 폐지되고 SJD가 많이 개설될 것이므로, 외국인 장학생들에게도 SJD 과정 장학생 입학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이 요망됨.

2. 전임교원 강의시수 제한 평가기준 개선

◀현행 문제점▶

- 평가기준에 의거, 로스쿨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는 ‘6시간/주 이하’로 되어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학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제4항) :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임교원은 주당 6시간을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재량에 따라 3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방통대 지원강의의 경우, 일정분량 녹화한 자료로 동영상 제공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로스쿨 교원의 경우 강의시수 제한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음

3. 예산지원 과제

«현행문제»

- o 로스쿨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법적 근거가 있으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제3조 제2항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음. 지방로스쿨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지자체 단위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 o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위한 입법검토 필요함

4. 법학전문대학원 이행실적, 자체(본)평가기준 개선

	현행 문제점	검토사항 / 개선방안 제안
교원 1인당 평균 연봉 [이행실적]	교원 1인당 평균연봉은 전임교원의 평균 산출임 - 조교수 등 신입교원이 많은 학교의 실정에 맞지 않음	교수 직급구성 비율을 감안하여 재직연차별 교원 연봉 평균을 점검하는 등 이행실적 확인방안에 개선이 필요함
장애학생 예산편성 [이행실적]	현재까지 장애학생이 없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시정 명령이 됨	장애학생 입학여부에 따라 예산편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여야 함
도서관 소장도서 [이행실적, 자체평가]	이행실적 5만권 이상, 자체평가 7만권 이상 소장요구 - 서고공간의 한계가 있고, 수량 맞추기에 집중되고 있음	소장도서 권수가 아닌 일정금액 이상의 도서구입비 확보 및 집행실적 평가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리걸클리닉 운영 과정 [자체평가]	실습과정을 임상과목과 현장학습과정으로 이원화하여 평가 - 로스쿨 실무교원이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외부변호사를 통한 임상과목 실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실습과정은 현장학습과정만 포함하고 임상과목은 기존 법률상담센터와 유사한 리걸클리닉 운영하는 것으로 재구성 등 개선이 필요함

- 위원구성현황 -

(2011. 1. 1 기준)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21인)		
구 분	대 학 명	성 명
위원장	영산대	부 구 욱
부위원장	명지대	유 병 진
위 원	경상대	하 우 송
	국민대	이 성 우
	고려대	이 기 수
	단국대	장 호 성
	대진대	이 천 수
	동국대	오 영 교
	동아대	조 규 향
	서남대	김 응 식
	선문대	김 봉 태
	울산대	김 도 연
	인하대	이 본 수
	전남대	김 윤 수
	제주대	허 향 진
	조선대	전 호 종
	중앙대	박 범 훈
	청주대	김 윤 배
	한양대	김 종 량
	한중대	이 승 일
홍익대	장 영 태	
자문교수	국민대	안 경 봉
	부산대	강 대 섭
	전남대	이 철 환
	중앙대	장 재 욱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국 · 공립대학발전위원회



좌 장 : 장병집 위원장 (충주대학교 총장)

발 표 : 명재진 교수 (충남대학교)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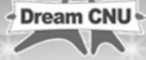
2011. 1.

충남대 명재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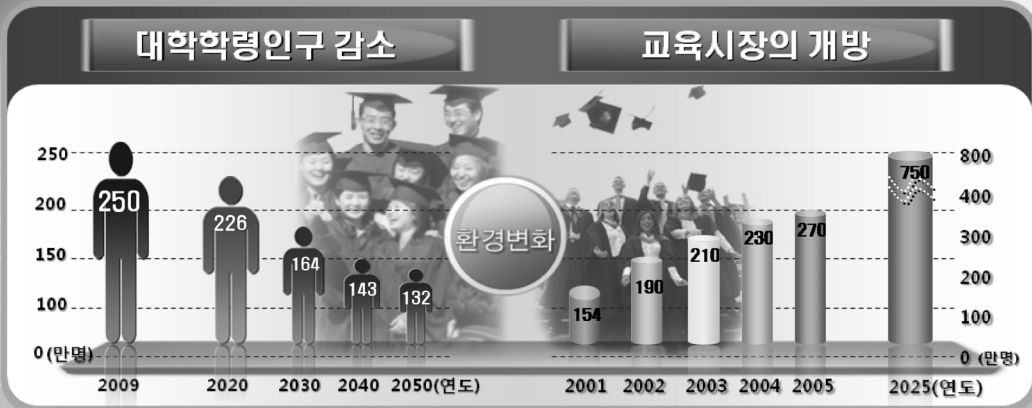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정책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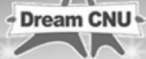
1. 정부의 법인화 추진 배경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감소

美 외국인 유학생수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정책



1. 정부의 법인화 추진 배경

● 대학의 평가·인증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서열화

국제사회의 평가요구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인구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OECD/UNESCO/EUEA 등
국제사회의 평가 요구

세계대학들의 교육개혁

서열화에 대응한
세계 대학들의 교육개혁

외국의 대학평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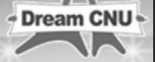
The Times, 87점
U.S. News, 90점
The Times, 상하이 교통대학
US News & World Report

국내의 대학평가기관

중앙일보, 78점
조선일보, 80점
중앙일보, QS-조선일보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정책



1. 정부의 법인화 추진 배경

고등교육 내용 및 형태의 변화

20C 산업시대 대학교육

- 지식 암기형 인재
- 대규모 제조 및 산업현장
- 점수 중심 선발



인재모집

활동무대

선발기준

21C 지식융합시대 대학교육

- 글로벌 창의인재
- 신 개념 제품 개발
신 시장 개척
- 창의성, 성장잠재력,
재능 중심 선발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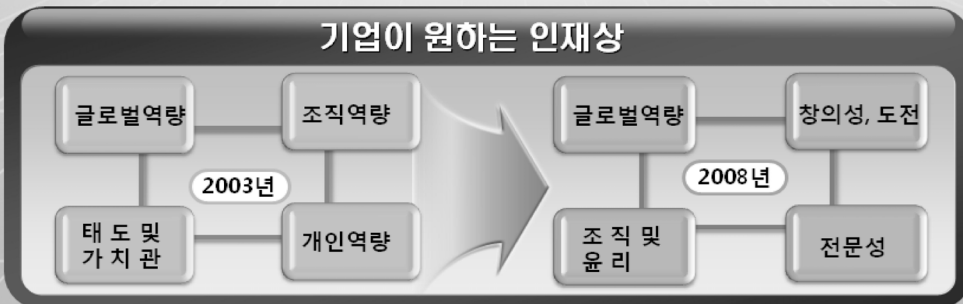
1. 정부의 법인화 추진 배경

대학운영 방향의 변화

- 시장원리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
-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정책

1. 정부의 법인화 추진 배경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기조

- 대학 구조조정 및 법인화 유도 → 효율적 경영체제
- 대학 자체평가의 의무화 및 공시 → 자구노력 유도
- 대학 정보공시제 시행 → 투명화
- 성과중심 각종 재정지원사업 → 특성화



▶ 대학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운영체제
-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



Chapter 1. 지배·구조

1. 쟁점 분석

▶ 주요 쟁점

- 이사회의 개방성
- 총장의 이사장직 겸직 허용 여부 및 선출방식
- 법인화 후 교수회의 위상
-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주요 쟁점 및 법(안) 분석

법인분석

구 분	국립대법인화법안	도교대	울산과기대	서울대법인화법안
이사회개방성	외부자지배형	내부자지배형	외부자지배형 (전원 외부인사)	내부자중심의 절충형 (외부인사비율명문화)
총장선출방식	간선제	직·간선제 절충형	간선제	직·간선제 절충형
총장의 이사장겸직	겸직금지	겸직허용	겸직금지	겸직금지 (초대총장에한해겸직허용)
교수회위상	언급 없음 법정심의기구인 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설치	교육연구평의회와 경영협의회 존재	학내기구에 관한 규정 없음	구성원이 참여하는 법정심의기구로 확대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이사의 자격과 유사 정관작성, 설립등기	-	국립대법인화법안과 대동소이	국립대법인화법안과 대동소이

1. 주요 제안

총장 선출방식

- 제1안: 직선제와 간선제의 절충형(서울대, 도쿄대)
- 제2안: 간선제(울산과학기술대)
- 제3안: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내부인사의 비율을 과반수로 규정하는 것)

법인화 후 교수회의 위상

교수·학생·직원의 대표로 구성하는 대학평의회로 확대 발전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명망 있는 학내·외 인사를 다양하게 포함시켜 정관 및 학칙을 통해 구체화되는 법인화의 설계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을 유도



1. 주요 쟁점 및 현황 분석

주요 쟁점

- 대학 회계 통합관리 및 재정 지출 효율성 극대화
- 자체 수익 제고
- 자율경영 재정기반 확충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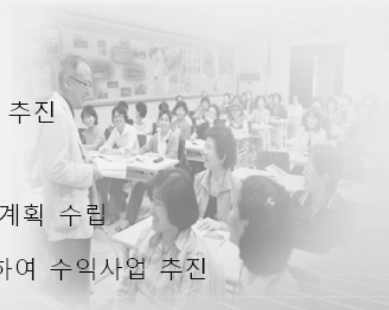
- 대학회계의 통합 관리 및 재정지출 효율성 극대화할 필요
- 자율경영 재정기반 확충 미흡
- 자체 수익사업에 대한 경험부족 및 실적 저조



2. 주요 제안

주요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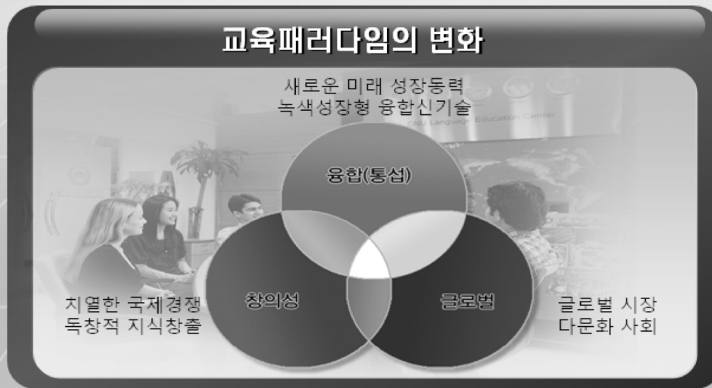
- 정부지원금 규모확대방안 필요
- 재정 자율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의 재정 책임 법제화 추진
- 재정지원 감소에 대비한 자체 재정확보대책 수립
- 대학 자체수익사업을 위한 Seed Money 및 장기운용계획 수립
- 자체재원 확보방안과 전문 재정운용 조직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추진



1. 주요 쟁점

현황 분석

- 21세기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 인재 양성시스템의 선진화 및 교육성과 제고



1. 주요 쟁점

새로운 인재 양성의 제약 조건

학내

- 낮은 전임 교수 확보율
- 구성원의 개인주의 및 무관심
- 학문단위 사이의 높은 장벽
- 다양한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재(공간, 예산)



학외

- 학사조직 개편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국립학교 설치령)
- 부족한 국비 예산 지원 및 집행의 경직성
- 창의성, 성장잠재력, 재능 중심 선발

2. 주요 제안

주요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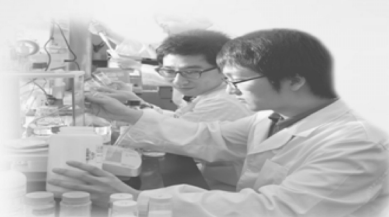
- 학사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 교육중심과 연구중심 교수단 및 학문 단위를 각각 분리
- 교육중심 교수단과 연구중심 교수단의 인적 교류 가능성 확보
- 교육중심 교수로 이루어진 교육전담 학사조직 설치(예: 교양과정학부)
- 학연교수 또는 산학교수 등의 임용 확대 및 활용
- 국내외 우수교수(교육·연구·산학협력)의 영입 및 활용
- 우수 강의교수제의 정착 및 확대



1. 연구부문

주요 쟁점

- 연구의 수월성 제고
- 경쟁적 연구비 수주를 통한 학교 재정의 확충
-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통한 유·무형의 자산 확보



현황 분석

- | | |
|------------------------------------|--------------------------------|
| ○ 세분화된 학문단위
➔ 대형과제 수주 대응체제 미비 | ○ 신입교수 연구 정착 지원제도 미비 |
| ○ 업적평가상 연구비 수주액과 대학원생 지도 업적의 반영 미흡 | ○ 우수 연구교수 초빙 및 지원시스템 미비 |
| ○ 연구분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미흡 | ○ 연구소 운영의 비효율성 |
| | ○ 이원화된 연구 지원체계: 단과대 중심과 연구소 중심 |



2. 산학협력

주요 쟁점

-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 대학재정자립 수익 사업 창출
- **학교기업 등 수익기구** 활용



현황 분석

-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식 부족
-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실적 저조로 인한 낮은 수익률
-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전문성 및 자원 부족
-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증대 필요
- 학교기업의 창업 실적 저조



16

3. 주요 제안

연구 부문

- 연구중심교수제도 도입
- 학문단위간 장벽 해소를 통한 대형연구사업의 수주체제 완비
- 우수연구자의 정년 연장 및 석좌교수제도 도입
- 우수신임교수 조기정착 지원제도 수립
- 파격적 지원 하의 국내외 우수연구자 초빙
- 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유사연구소 통·폐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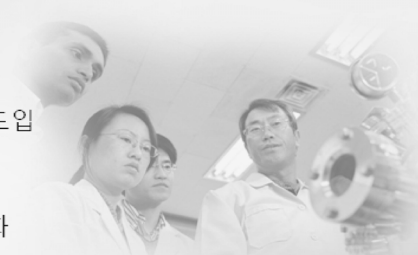


17

3. 주요 제안

산학협력 부문

- 산학협력중심교수제 도입
- 산학협력을 위한 교수의 민간기업체 파견제도 도입
- 연구간접비의 효율적 재투자방안 창출
- 외부 연구비 수주확대를 위한 연구기획기능 강화



기초 및 보호학문분야 지원방안 수립

- 기초 및 보호학문 분야의 기준설정, 조사 및 분석
- 중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



1. 조직관리

주요 쟁점

- 교육조직 및 행정조직의 역할 관계
- 법인화 후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



현황 분석

교육조직

-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간의 역할 관계의 정립 미흡
- 대학(원) 및 학과(부)의 설치기준 미흡
- 특수대학원의 교육 수요 대응부족

행정조직

- 기능 아닌 대상중심의 대학본부 조직 편제
- 단과대학(원) 행정실의 불균형적 인력 배치
- 대학본부 조직, 지원시설, 부속시설간 설치 기준 불명확



2. 인사관리

주요 쟁점

- 교원과 직원의 2원화된 조직과 인사관리 체계의 변화
- 교직원 신분보장, 연금, 정년 등 인사제도의 변화



현황 분석

- 공무원인 교직원은 신분보장, 연금, 정년 등 법령에 의해 보장
- 비 공무원인 교직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학교 규칙 및 노사협약에 따름



20

3. 주요제안

조직 관리

-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간의 역할 관계의 재정립
- 단과대학 및 학과 등의 설치기준 설정
- 대상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본부조직 개편
- 단과대학 행정실의 통합 및 인력 재배치



21

3. 주요제안

인사 관리

교육조직

-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간의 역할 관계의 재정립
- 단과대학 및 학과 등의 설치기준 설정
- 특수대학원의 재편

행정조직

- 대학 본부와 부속기관의 개편
→ 대상중심이 아닌 기능중심으로의 조직개편
- 단과대학 행정실의 통합 및 인력 재배치

3. 주요제안

인사 관리

구 분	교 원	직 원
신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보장에 관한 임직적 규정과 구체적 해고사유의 명시 ○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취업규칙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전환을 원치 않는 공무원은 5년간 신분 유지 후 타 기관으로 전출 ○ 공무원과 기성회직원을 통합관리
정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65세로 규정 ○ 신규채용 교원은 탄력적으로 규정 ○ 탁월한 성과가 있는 교원은 별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으로 단일화 ○ 직종과 직급에 따라 정년 차등화 고려
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 적용

1. 주요 쟁점 및 현황분석

주요 쟁점

- 대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 조직평가와 개인평가의 연계를 통한 대학발전 유도
- 대학의 개성을 강조하는 특성화 분야 육성 유도



2. 주요 제안

기본방향

- 기관, 부서, 개인의 분명한 역할 분담과 성과 평가 보상체계 수립
- 투입량 위주의 평가에서 산출 성과중심의 평가로 전환
-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 및 전산 시스템 구축
-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의 자생적 노력 필요



2. 주요 제안

실천전략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비전 제시
- 기관별 비전 달성 전략수립 및 실천
- 목표/추진전략/ 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평가지표의 고도화



2. 주요 제안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서 총장의 권한 설정
- 학장(학과장), 기관 부서 장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평가와 성과급 배분
- 교수 및 직원의 봉급 체계와 평가에 따른 성과급 배분
- 학문단위기관 및 부속기관의 평가와 예산 배정
- 교수 및 직원의 승진 체계와 평가의 연계



- **서울대 법인화 법률 국회통과**
 - ➔ 국립대의 현안 과제로 급 부상
- **법인화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성 대두**
- **지배구조, 재정회계, 교육학사, 연구, 산학협력, 조직인사 평가의 6개 분야에 대한 법인화 분석**
 - ➔ 문제점 도출 ➔ 대비할 사항에 대한 제안
- **향후 법인화 논의과정**
 - ➔ 학내구성원 간의 긴밀한 토의와 합의 필요

- 위원구성현황 -

(2011. 1. 1 기준)

국·공립대발전위원회 (22인)		
구 분	대 학 명	성 명
위원장	충주대	장 병 집
부위원장	공주대	서 만 철
위 원	강원대	권 영 중
	강릉원주대	한 송
	경상대	하 우 송
	군산대	채 정 룡
	대구교대	손 석 락
	목포해양대	안 영 섭
	부산교대	김 상 용
	부산대	김 인 세
	서울교대	송 광 용
	서울산업대	노 준 형
	안동대	이 희 재
	전주교대	나 기 연
	진주교대	정 보 주
	창원대	박 성 호
	청주교대	김 수 환
	춘천교대	김 선 배
	충남대	송 용 호
	한국체대	김 종 욱
	한국해양대	오 거 돈
	한밭대	이 원 목
자문교수	충남대	신 희 권
	충남대	명 재 진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사학법대책위원회



좌 장 : 김혁중 위원장 (광주대학교 총장)

발 표 : 이시우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교협 사학법대책위원회

사학법대책위 추진방향과 과제

서울여대 이시우 교수

2011. 1.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I 추진 배경

II 현황 및 문제점

III 추진방향과 과제

I

추진경과

I. 추진경과

'09.3.30

-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안 관련 국회발표

'09.4.9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고려대세미나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 개최 및 논의

-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

- 제1안 :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 제2안 :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제3안 :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사학 관련 필수사항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의 편제

'09.10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 논의 내용

- 사립학교법 폐지를 전제로 새로 사립학교법을 대체할 사학진흥법 제정안이 제안됨
- 이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서 이재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마련한 안으로 여겨짐
-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안은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됨

'10. 4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

● 이남식 총장 발표

통제중심의 사학 감독체계인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으로 국공립대학과의 재정지원 차별,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문제 조항인 정관, 개방형이사제도,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문제 등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며 사립학교진흥법 또는 사립대학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함

● 이영선 총장 토론

사립대학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사립대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사학진흥법 제정을 통한 경상지 지원의 명문화, 자율적 대학평의회 설치 등이 요구됨

'10. 6

●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안 관련 국회발표

-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의 자주성을 보장하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 개정되어야 함**
- **이에 대해 서울여대 이시우 교수는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의 제정을 제안하고 이재교 변호사는 사학진흥법(안)의 제정을 제안함**

제안법(안)	제안자	내 용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이시우 교수 [서울여대]	사립대학육성의 위한 경상비 보조금을 당해 연도의 사립대학경상비 총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상으로 국가예산에 계정할 것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사학진흥법(안)	이재교 변호사	설립, 정관, 임원, 개방이사제도, 대학평의원회의 임의 기구화 등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원에 의한 임원해임 제도 등을 개선하며, 회계통합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여 재정을 개혁함과 교육비 등의 사학지원 및 교원의 신분보장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과 사학진흥법(안)의 비교

-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은 기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반면, 사학진흥법(안)은 사립학교법의 폐지를 전제로 함
-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립대학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사학진흥법(안)은 기존 사학관련 법안들의 문제점 해소와 사립대학에의 지원을 동시에 추구함

발전방향과 과제

- 사립학교법의 위헌적 요소 개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동시 추구하면서, 개방이사제도, 대학평의원회, 임시이사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사립대학의 자주성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들의 개정에 초점을 두어야 함

II 현황 및 문제점

II. 현황 및 문제점

제18대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안 전망 불투명

- 현재 황우여 의원(한), 조전혁 의원(한), 김영진 의원(민) 등이 사립학교법 개폐에 관심 보임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2009년 3월 황우여 의원과 김영진 의원에게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을 설명한 바 있음
- 조전혁 의원의 경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사학진흥법안을 제안하려고 현재 준비 중이라는 정보도 있음
- 그러나 실제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 내지 폐지 가능성에는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로 판단됨

대교협 사학법대책위원회 기본입장 확립의 필요성 제기

1 문제제기

-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의 자율화/규제완화/책무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함
- 자율화/규제완화/책무성 확보의 걸림돌은 통제 중심의 사립학교법제와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육성책의 부재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립대학들의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경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2 사립학교법 개폐문제

-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 체제를 가진 사립학교법
 - 사학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가진 사립학교법
 - 사학의 자유에 관한 구체화 규정이 없는 사립학교법
 - 교육제도법률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법

② 사립학교법 폐지문제

- 사립학교법 관련 입법개선방향
 - 제1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사학육성법의 제정
 - 제2안: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보완입법으로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제3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개정
 - 제4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학교법인법, 사학교원에 관한 법률, 사학육성법의 제정

③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 사학의 자유 보장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규정이 없음.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근거한 사학의 설립 및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필요함.

③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 개방이사제 위헌성 해소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방식은 개방이사의 선임권이 실제로 학교법인에 있지 않고 대학평의원회 내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사학의 설립·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③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 제1안 : 개방이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개방이사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모두 폐지)
- 제2안 :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사회, 교육·학술계 등의 인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에서 선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개방이사제 유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제도 폐지)

③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 대학평의원회 제도 문제점 해소

제1안 : 현재는 사립대학 내에서 법적 심의기구로 되어 있으나 기존의 교무위원회나 학·처장회의와 같은 기구들과 그 기능 및 대표성이 충돌하고 있음. 그러므로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교무위원회 또는 학·처장회의와 같은 기구들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③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 대학평의원회 제도 문제점 해소

제2안 : 사립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제도를 유지하되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화 함으로써 기존의 교무위원회 또는 학·처장회의와 기능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③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관할청의 직접적 개입을 막음으로써 이사회제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도 분쟁이 있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도의 도입취지에 공감하나,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종교계 소속의 성직자 자격이 빠져 있는 점은 종교계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학의 비중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음.

③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구성방법이나 소속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그러므로 상임위원제를 도입하여 사분위 업무를 상임위원장과 1인의 상임위원이 상근하여 보도록 하고, 사분위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지원 시스템도 갖추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사분위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Ⅲ 추진방향과 과제

Ⅲ. 추진방향과 과제

① 추진방향 확정 및 전담기구 제안

- 사학법대책위원회는 앞으로의 활동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데 다음 4가지 법안을 준비하여야 함.

(1안) 사립학교법 폐지와 대체입법으로 사학육성법안의 마련

(2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및 보완입법으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마련

- 현재 1, 2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세부조정과 정리가 필요

① 추진방향 확정 및 전담기구 제안

- 사학법대책위원회는 앞으로의 활동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데 다음 4가지 법안을 준비하여야 함.

(3안) 사립학교법의 폐지와 이에 따른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 현실적,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종 개정안 마련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

(4안) 사립학교법 폐지와 대체입법으로 학교법인법, 사학교원에 관한 법률, 사학육성법의 3개 개별 법률안 마련

- 1안의 사학육성법안을 세 개의 법률로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법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① 추진방향 확정 및 전담기구 제안

- 1안과 2안을 중심으로 하나의 최종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입법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와도 일치하며 또한 효율적이라 사료됨
- 개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사립학교법 개정 및 보완입법으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 마련이 기본입장으로 확정되었으면 함.

① 추진방향 확정 및 전담기구 제안

- 법의 개정 혹은 제정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원확보 문제, 소요예산의 추산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는 대학재정대책위원회와 함께 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이와 관련한 대 국회 차원의 입법운동에 역량을 집중하되, 대 정부 차원의 입법운동 내지 재정확보 운동도 병행하여야 함.
- 특히 대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산 확보 운동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료됨.

① 추진방향 확정 및 전담기구 제안

- 대교협 사학법대책위원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의 일체성하에서 일관성 있고 꾸준한 사학법대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담기구 및 전담위원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어야 함.
-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산하에 과거 ‘사립대TFT’ 을 구성해 운영했었는데 전담 상설기구로 가칭 ‘사립대발전기획단’ 을 두어 능력 있는 인사 중에 기획단장을 위촉하여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대학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노력 및 사립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들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할 것을 제안함.

새로운 추진 과제 및 이슈 대응 방안 마련

Ⅲ. 추진방향과 과제

학교 법인 해산 시 사립학교법상 재산환원 규정 마련 필요성 문제

- 10% 내지 30% 환원 논의있음

사립학교법상 사립대 구조조정 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성 문제

- 통폐합, M&A,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전환 논의 있음

사립대 국외분교 설립규제 완화 내지 철폐 문제

-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충족 규정 완화 문제 논의 있음
- 해외 분교에 교비회계 활용할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논의 있음

감사합니다

- 위원구성현황 -

(2011. 1. 1 기준)

사학법대책위원회 (23인)		
구 분	소속대학	성 명
위원장	광주대	김 혁 종
부위원장	동양대	최 성 해
위 원	건동대	이중수(직대)
	경동대	신 동 진
	경운대	김 향 자
	관동대	박 희 종
	광운대	김 기 영
	극동대	류 기 일
	남부대	조 성 수
	대구한의대	이 준 구
	부산장신대	유화준(직대)
	서경대	최 영 철
	서울기독대	임 종 운
	서울신학대	유 석 성
	서울장신대	문 성 모
	세명대	김 유 성
	영동대	송 재 성
	인제대	이 원 로
	침례신학대	도 한 호
	칼빈대	길 자 연
	평택대	조 기 흥
	한영신학대	한 영 훈
자문교수	호서대	강 일 구
	서울여대	이 시 우
	명지대	손 희 권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좌 장 : 이현청 위원장 (상명대학교 총장)

발 표 : 이영학 교수 (동의대학교)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 위원구성현황 -

(2011. 1. 1 기준)

대학평가대책위원회 (46인)		
구 분	소속대학	성 명
위원장	상명대	이 현 청
부위원장	호원대	강 희 성
위 원	계명대	신 일 희
	고신대	김 성 수
	광신대	정 규 남
	광주가톨릭대	노 성 기
	광주교대	박 남 기
	광주여대	오 장 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 원 우
	나사렛대	임 승 안
	대구대	홍 덕 룰
	대구예술대	김 정 길
	대전가톨릭대	민 병 섭
	덕성여대	지 은 희
	동덕여대	김 영 래
	동서대	박 동 순
	삼육대	김 기 곤
	서울교대	송 광 용
	서울산업대	노 준 형
	성결대	정 상 운
	성신여대	심 화 진
	세종대	박 우 희
	수원가톨릭대	이 용 화
	아세아연합신학대	황승룡(직대)
	안동대	이 희 재
	영남대	이 효 수

대학평가대책위원회		
구 분	소속대학	성 명
위 원	영남신학대	진 희 성
	울산과기대	조 무 제
	원광대	정 세 현
	위덕대	배 도 순
	전북대	서 거 석
	전주대	이 남 식
	진주교대	정 보 주
	청운대	이 상 렬
	포항공과대	백 성 기
	한경대	김 성 진
	한국교원대	권 재 술
	한국국제대	손 정 응
	한국외국어대	박 철
	한국해양대	오 거 돈
	한동대	김 영 길
	한려대	서 복 영
	한성대	정 주 택
	한일장신대	정 장 복
	호남대	서 강 석
	호남신학대	차 종 순
자문교수	서울여대	배 호 순
	동의대	이 영 학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국제화대책위원회



좌 장 : 김형태 위원장 (한남대학교 총장)

발 표 : 최흥석 교수 (고려대학교)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의 모색 -

- ◆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현황
- ◆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진척에 따른 문제점
- ◆ 대교협 차원의 개선 방안

2011. 1
고려대학교 국제처장
최흥석

I.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현황		Global KU Frontier Spirit				
I.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학생 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p style="text-align: center;">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p>						
2. 유학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연도/유학형태	자비유학생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초청장학생	자국정부파견	기타	합계
2007	42,273	581	3,706	511	2,199	49,270
2008	54,934	837	5,010	587	2,584	63,952
증감	12,661	256	1,304	76	385	14,682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배포자료 인용						
고려대학교 국제처						

I.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현황

I.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3. 출신지역별 유학생 수 (2008년)

지역	어학연수	과정별					기타	합계
		인문사회	이공	자연계	예체능	계		
아시아	18,264	25,833	7,149	3,123	2,362	38,467	2,644	59,375
아프리카	72	206	71	30	3	310	15	397
오세아니아	47	64	9	9	11	93	38	178
북미	515	776	49	96	86	1,007	643	2,165
남미	78	130	29	11	7	177	23	278
유럽	545	390	83	18	40	531	483	1,559
합계	19,521	27,399	7,390	3,287	2,509	40,585	3,846	63,952

4. 주요 국가별 현황 (2008년)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 수	44,746	3,324	1,481	1,817	1,158	2,022	9,404	63,952
비율(%)	70.0	5.2	2.3	2.8	1.8	3.2	14.7	100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배포자료 인용

고려대학교 국제처

I.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현황

II.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통해 살펴본 국내대학 국제화 현황

1.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지표 상위 30개 대학 평균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 교수비율	10.50	12.23	12.21	13.57	13.25
외국인 학생비율	2.25	3.50	3.28	4.09	3.97
해외파견교환학생	1.08	1.49	1.66	1.43	1.8
국내방문교환학생	1.73	2.71	2.19	2.51	2.79
영어강의비율	7.17	8.51	10.81	13.57	20.63

2.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지표 상위 10위 대학 평균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 교수비율	17.61	20.40	20.62	23.85	22.89
외국인 학생비율	3.53	5.76	5.5	6.8	6.39
해외파견교환학생	1.50	2.13	2.75	2.78	3.13
국내방문교환학생	3.05	4.80	4.41	5.23	5.25
영어강의비율	12.87	16.92	22.66	29.69	3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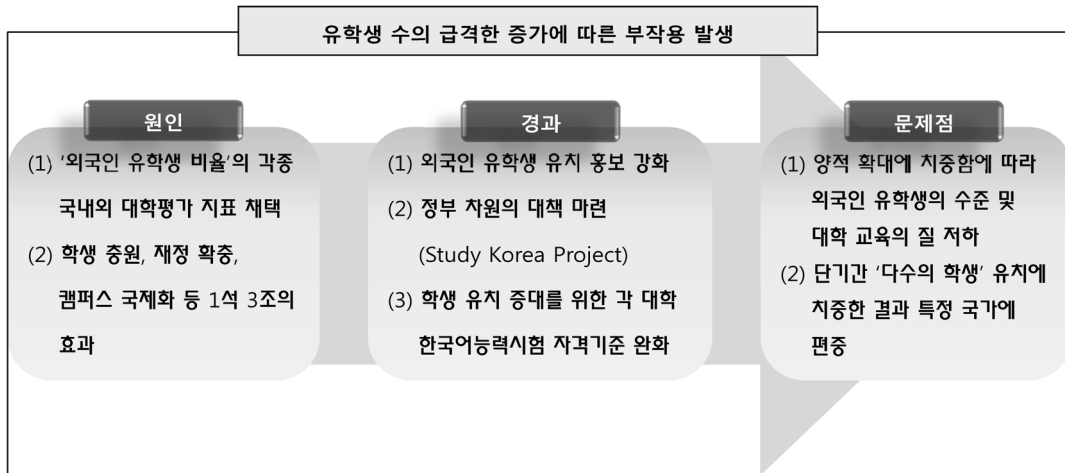
※ 중앙일보교육개발연구소 자료 인용

고려대학교 국제처

II.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진척에 따른 문제점

Global KU
Frontier Spirit

I. 외국인 유학생



고려대학교 국제처

II.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진척에 따른 문제점




Global KU
Frontier Spirit

I. 외국인 유학생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현상 심화

-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3년 12,314명에서 2008년 63,952명으로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
- 이 중 중국국적 유학생 수가 2003년 5,607명에서 2008년 44,746명으로 확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캠퍼스의 진정한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국가, 언어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중국인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재학생 반응 -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내용 발췌>

	<p>[리플2] 99999999 2010-12-03 11:30:31</p> <p>너무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새내기로 입학하는 중국인 학우분들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권택도 힘들고 과 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단과대 내에 외국인학생협회를 건설 중이지요.</p>
	<p>[리플29] BARNEY 2010-12-03 11:53:33</p> <p>26/ 근데 진짜 중국 학생들 너무 자기들끼리 몰려다니요. 좀 친해지려고 해도 잘 안 섞이려 들더라구요.</p>
	<p>[리플35] 마나번 2010-12-03 12:04:00</p> <p>32/외국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인은 지네들끼리 몰려다니도 자기가 유학온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려 문화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국 애들은 자기들끼리만몰려다니기도 하고 몰려다니면서중국어로 시끄럽게라고 다니는 민폐는 고대어디서나 목격할수있습니다. 오죽했을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할꺼면 꺼지라고 영어로 욕했을까요. 지네들끼리 몰려다니니 섞으려고 시도하지 마실..</p>

고려대학교 국제처

<2010 대학정보 공시>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사립 전문대가 국·공립의 4배 육박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 게재 일자 : 2010-10-01 13:52



비수도권 사립 전문대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내국인 학생 중도탈락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지원체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일반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5.1%였다.

www.superfeaturing.com

Google 광고

하지만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13.2%로 내국인 학생 중도탈락률(7.0%)보다 높았다.

특히 사립 전문대와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국공립전문대가 3.6%, 사립전문대가 13.2%였고, 대학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 7.6%, 비수도권 전문대가 14.4%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은 정부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비롯한 대학 글로벌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대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전문대가 4년제 대학에 비해 학생 관리체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문대에 유학온 뒤 여러가지 이유로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생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내국인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일반대학 4.1%, 전문대 7.0%였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심각...서울대까지!

입력시간 : 2009-10-21 03:36

나도원마디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



동영상보기

[앵커멘트]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한 명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대 등 주요 대학까지 유학생 이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학교에 어학연수나 학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70여 명.

이 가운데 22명은 장기간 학교를 나오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간 연세대도 45명, 고려대 36명, 이화여대도 외국인 유학생 26명이 잠적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8,460여명이 이처럼 학교를 나오지 않고 대부분 불법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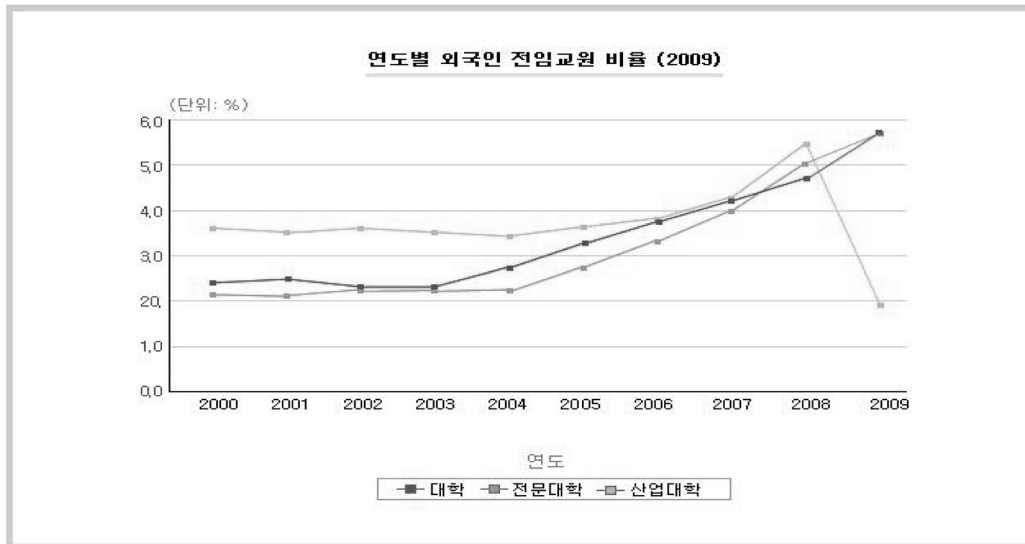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II.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진척에 따른 문제점

Global KU
Frontier Spirit

II. 외국인 교수

1. 연도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고려대학교 국제처

II. 국내대학 캠퍼스의 국제화 진척에 따른 문제점

Global KU
Frontier Spirit

II. 외국인 교수

1. 연도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구분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전임교수	외국인	비율	전임교수	외국인	비율	전임교수	외국인	비율
2000	41,788	985	2.4	11,555	241	2.1	2,371	86	3.6
2001	43,147	1,073	2.5	11,739	250	2.1	2,437	86	3.5
2002	44,018	1,028	2.3	12,005	266	2.2	2,524	91	3.6
2003	45,106	1,043	2.3	11,822	254	2.2	2,637	91	3.5
2004	46,837	1,287	2.7	11,720	252	2.2	2,526	85	3.4
2005	49,034	1,597	3.3	11,874	320	2.7	2,641	96	3.6
2006	51,696	1,931	3.7	11,712	386	3.3	2,103	80	3.8
2007	52,592	2,212	4.2	11,543	456	4.0	2,176	93	4.3
2008	54,162	2,529	4.7	11,958	598	5.0	2,124	117	5.5
2009	54,349	3,111	5.7	12,309	696	5.7	2,061	39	1.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고려대학교 국제처

II. 외국인 교수

2. 대학 국제화에 대한 외국인 교수의 기여

평가지표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강의 비율 향상 ✓ 외국인 교원 비율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법 · 학풍의 다양화 ✓ 원어민강의를 통한 학생 외국어 실력 향상 ✓ 간접적인 캠퍼스 국제화

3. 문제점

채용 과정에서의 자질 검증 시스템 부족

- 어학 교수들의 경우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영어 실력만 보고 선발하여 사망감 부족 등 부작용
- 범죄 경력 등 개별 대학이 검증할 수 없는 범위가 존재
- Ex) 논문 중복 게재, 한국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귀국 등 사례

외국인 교수 '모셔오기'...자질검증 '주먹구구'

총 3432명, 5년 전의 2.5배...정부 지원 주요 잣대로 이중 지원 논문 중복게재 '들뜸'...고환율 손실도 부담

[한겨레] + 정유경 기자

대학에 외국인 교수들이 몰려오고 있다.

외국인 교수의 존재가 이른바 '글로벌 대학'의 상징처럼 여겨지면서, 대학들이 앞다퉈 영입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며 외국인 교수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전임교수는 3432명(2008년)으로 전체 교수의 4.7%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500여명, 18%가 늘었고, 5년 전(1390명)에 견주면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 5년 전보다 2.5배 늘어 올해 들어 새 정부가 825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WCU) 프로젝트는 외국인 교수 영입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이 프로젝트에 선정돼 우수 외국 학자를 영입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와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모두 20개 과제가 선정된 서울대는 3월 외국인 교수 59명을 초빙하게 됨에 따라 별도의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국인 교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구 시설뿐 아니라 주거 복지 등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공립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외국인 교수를 10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학별로 '외국인 신규 채용 할당량'까지 정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보직 교수는 "외국인 교수 비율, 유명 석학 영입 여부가 정부와 기업 등의 각종 지원대상 선정의 주요 잣대가 되고 있다"며 "한두 개라도 선정되면 경쟁 대학 수준에 맞춰가야 하고, 학교의 위상을 홍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질·실력 검증 주먹구구 일단 '모셔오기'에 급급해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경제 경영 분야에 선정된 한 미국인 교수는 고려대와 서강대에 동시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선정이 취소됐다. 하나의 과제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선정이 취소된 고려대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지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허탈해했다. 건국대가 최근 초빙한 한 외국인 교수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엔 서울대가 정교수로 채용한 외국인 교수가 강의료를 맡은지 불과 한달여 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 귀국하는 일도 빚어졌다. 이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교수들은 급증하는데 이를 지원할 인프라는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 고환율에 부담 증가 최근에는 '고환율'로 인한 고민도 커졌다. 서울대 경영대는 채용 기회를 무려해 앞으로는 달러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할 계획이다. 이 학교 본부 차원에서는 재직 중인 이들에게 환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5억~6억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부담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교수들의 연봉은 최소 8천만원대 이상으로 국내 국립대 교수 초임 연봉(평균 4500만원)의 두 배 정도다. 이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정부가 수천억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교수 비율을 높이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이나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I. 외국인 유학생 국적 다변화를 위한 홍보 활동

1.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The Steering Committee for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CDESR) 등 해외 대학교육협의회 참석 및 정보 수집 활동

- ACE의 경우 대교협 차원에서 회원대학 참석 및 ACE 대표대학 면담 등의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음
- CDESR 유럽 각국의 교육부 및 고등교육 대표 모임으로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대교협 차원에서 참석하여 국내 대학들과 유럽 대학들간의 교류 촉진 및 유럽 교육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 ACE, CDESR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한국 유학 exhibition' 등의 개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유학생 유치 홍보 활동을 개시하고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국적 구성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음

II. 정보의 수집 및 공유, 제도개선

1.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회원대학 간 정보 공유 창구 마련

-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 회원대학 별 노하우, 운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우수 사례 선정
- 세미나 / 컨퍼런스 내용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2. 실무 담당자 간 실시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대학명의로 SNS 프로그램 개발

- 특정 이슈에 관한 각 실무 담당자 노하우 전수, 의견 교환 가능

3.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사례 수집

- 대정부 제도개선 요구 창구로서의 역할

고려대학교 국제처



Thank You

- 위원구성현황 -

(2011. 1. 1 기준)

국제화대책위원회 (20인)		
구 분	소속대학	성 명
위원장	한남대	김 형 태
부위원장	안양대	김 승 태
위원	경남대	박 재 규
	루터대	김 해 철
	목원대	김 원 대
	배재대	정 순 훈
	부산가톨릭대	윤 경 철
	부산외국어대	유 선 규
	성공회대	양 권 석
	성민대	이 강 무
	순천대	임 상 규
	용인대	김 정 행
	예원예술대	윤 호 군
	장로회신학대	장 영 일
	총신대	정 일 응
	추계예술대	임 상 혁
	한국기술교육대	전 운 기
	한국항공대	여 준 구
	한세대	김 성 혜
	협성대	최 문 자
자문교수	경북대	권 선 국
	고려대	최 흥 석

* 위원수에는 자문교수와 전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